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

쉬워요!





목 차

01

폭행 및 상해

- 누군가와 싸웠거나 상대방을 때려서 다치게 했을 때 -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서 밀었을 뿐인데, 폭행죄라고요?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	008
폭행·상해죄에 관하여	009
폭행·상해사건의 처리절차	012
고소, 누가, 어디에, 어떻게?	018
진단서 발급에 관하여	021
피의자로 조사받을 경우 주의사항	022
구속의 의미, 구속 후 절차, 석방방법	024
형사합의의 절차 및 주의사항	027
재판받을 때의 주의사항	030
사례1. 단순 시비로 가볍게 싸워 다치지는 않은 경우	033
사례2.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035
사례3. 형사처벌을 받은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039
사례4. 다른 사람에게 맞아 다친 경우	041

02

마약 관련 범죄

- 마약류 불법 처리 등에 따른 법률 문제 -

마약을 운반만 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는다고요?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	046
마약류 불법 처리 등에 따른 법률 문제	047
사례1. 마약을 흡입한 경우	050
사례2. 마약을 운반한 경우	052

03

성 관련 범죄

- 성폭력의 개념과 그 처벌 -

예쁘다고 칭찬을 했을 뿐인데,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요?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	056
성폭력의 개념과 그 처벌	057
사례1.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성희롱인가요?	061
사례2. 연애하거나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064
사례3.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한 것도 성희롱이 된다고요?	066
사례4. “몸매가 예쁘다”고 칭찬하는 것도 성희롱 인가요?	068
사례5. 여직원에게 다른 회사 남자 직원들과의 술자리에 꼭 오라고 명령하면?	070
사례6. 상대방이랑 자고 돈을 받았어요. 죄가 되나요?	072
사례7. 유부남(녀)과 성관계를 맺었어요	074
사례8. 일하는 곳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우	075
사례9.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077
사례10. 성폭력 사건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079

04

명예훼손, 모욕죄

-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친 경우 -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 인터넷에 글을 쓴 것 뿐 이라고요!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	082
사례1. 다른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고 소문을 낸 경우	083

05

절도 범죄

-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훔친 경우 -

마음대로 쓰는 것은 되고, 집에 가져가는 건 안 된다고?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	088
절도죄(개인재산훔친죄)에 관하여	089
사례1. 놓고 있는 다른 사람 땅에 나무를 심는 경우	092
사례2.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서 사용한 경우	094



목 차

06

다단계 관련 범죄

- 다단계 관련 범죄 피해의 경우 -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사업 권유, 믿어도 될까?	096
사례1.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회원 가입을 권유한 경우	097
사례2. 취업 빙자 다단계	100

07

사기 및 보험사기

-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벌었거나 속아서 돈을 잃은 경우 -

원금 보장에 수익률이 두 배? 투자해도 괜찮을까? <이것만은 꼭! 알아둬시다!>	102
사기죄(개인재산속여가진죄) 및 보험사기죄에 관하여	103
사기죄 처리절차 :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방법을 중심으로	106
사례1. 고용지원금제도를 악용하여 허위로 돈을 번 경우	109
사례2. 입원했다고 보험사 속여 보험금을 받은 경우	110
사례3.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112

08

경범죄

-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주의할 법률문제 -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뛰지도 못한다고? <이것만은 꼭! 알아둬시다!>	116
경범죄(가벼운 범죄) 처벌에 관하여	117
경범죄로 처벌받는 대표적인 유형	118
경범죄 통고처분 후 처리절차	120
사례1. 고성방가, 층간소음	121

09

노동법

- 직장 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대처 방안 -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어요. 난 어떻게 살라고? <이것만은 꼭! 알아둬시다!>	124
근로계약(로동계약)의 체결과 주의할 점	125
사례1. 밀린 임금(로임)을 청구할 경우	127
사례2.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130

10

교통사고

- 차량을 운전하며 발생하는 문제의 법률적 대처 방법 -

괜찮다고 해서 그냥 보냈는데, 제가 뺑소니범이라고요? <이것만은 꼭! 알아둬시다!>	134
교통사고 처리 관련 법률 문제	135
교통사고 사건의 처리절차	138
교통사고 발생기 현장대처 요령	139
사례1. 횡단보도(건능길) 위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40
사례2. 음주운전을 한 경우	141

11

법률상담 기관

-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 안내 -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	144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연락처	148



Q&A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 | 01

폭행 및 상해

누군가와 싸웠거나 상대방을 때려서 다치게 했을 때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서 밀었을 뿐인데, 폭행죄라고요?



폭행 및 상해

- 누군가와 싸웠거나 상대방을 때려서 다치게 했을 때 -



이것만은 꼭! 알아둬시다!!

1. 폭행은 범죄입니다. 징역·벌금을 내는 등 엄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2.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해도 주먹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 따라 법에 호소하세요!

○ 폭행·상해죄에 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범죄유형이 폭행죄입니다.

때리는 행위	밀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폭행이란?

사람의 몸을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때리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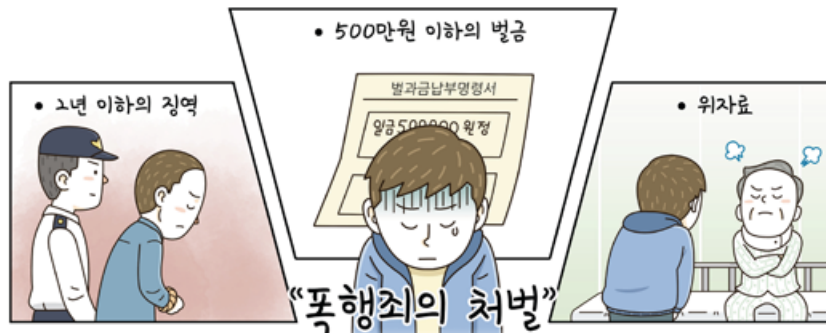
누군가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모두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처벌은?

폭행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교화소)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또한 폭행죄가 인정되면 위와 같은 국가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때린 사람이 맞은 사람에 대하여 돈(위자료)을 지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상해죄란?

폭행 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피가 나거나 다치는 등 신체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상해죄가 됩니다. 다치지 않은 정도면 폭행죄, 다치면 상해죄가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상해죄의 경우 처벌은?

상해죄가 인정되면 상해를 가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폭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2명 이상이 함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할 경우 특수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불구 또는 치료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면 처벌은 더 강해집니다.

처벌과 별개로 치료비, 일하지 못한 만큼의 수입,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등을 피해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상해죄>	<특수상해죄>	<상대가 크게 다쳤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폭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남한은 북한에 비하여 폭행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하므로 어떤 이유에서건 누군가를 때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폭행·상해 사건의 처리 절차



폭행·상해의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법원(재판소)에서 죄를 인정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범위를 신고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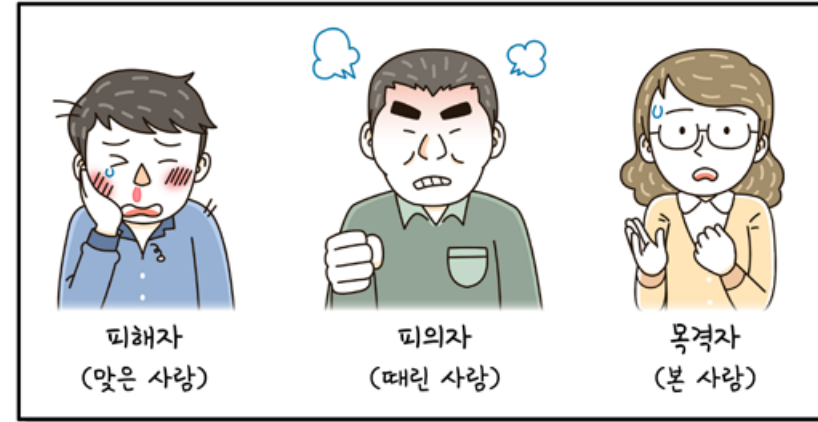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스스로 범죄 사실을 알게 되어도 조사를 하는데, 이를 인지수사라고 합니다.



고 소 : 피해자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고 발 :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인지수사 : 경찰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되어 조사를 하는 행위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경찰은 때린 사람, 맞은 사람, 본 사람 등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① 경찰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를 경찰서로 불러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② 조사가 끝나면 범위를 지었다고 의심받는 사람(피의자)을 불러 조사합니다.

만일 귀하가 피의자라면, 경찰은 귀하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할 겁니다. 경찰이 언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장을 확보**하여 내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를 미리 알고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정보공개 청구



또는

스마트폰과 PC로 정보공개 청구



<https://www.open.go.kr>

1주일 이내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받아볼 수 있다.

고 소 장

고소인		
피고소인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찾아가거나,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청구**를 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피의자를 구치소(구류장) 등에 잡아 둘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수사를 종결합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은 자료와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보냅니다(송치).

송치

경찰

검사



* 2021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어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검사는 범죄가 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를 기소 또는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을 재판에 부쳐서 심판받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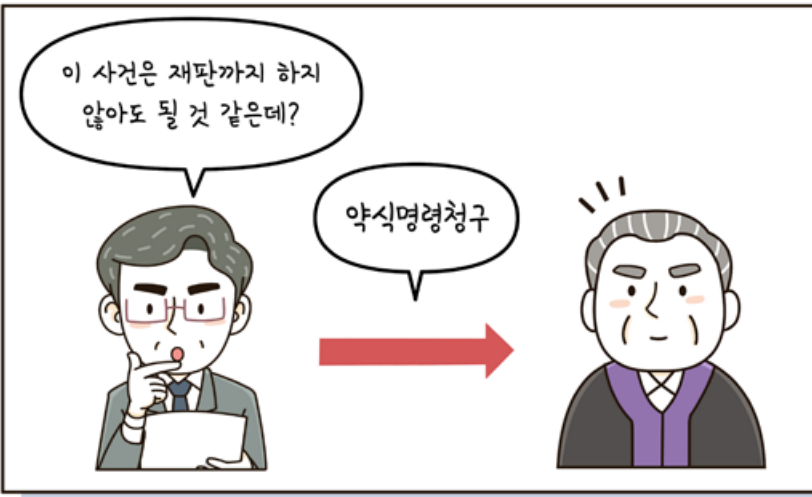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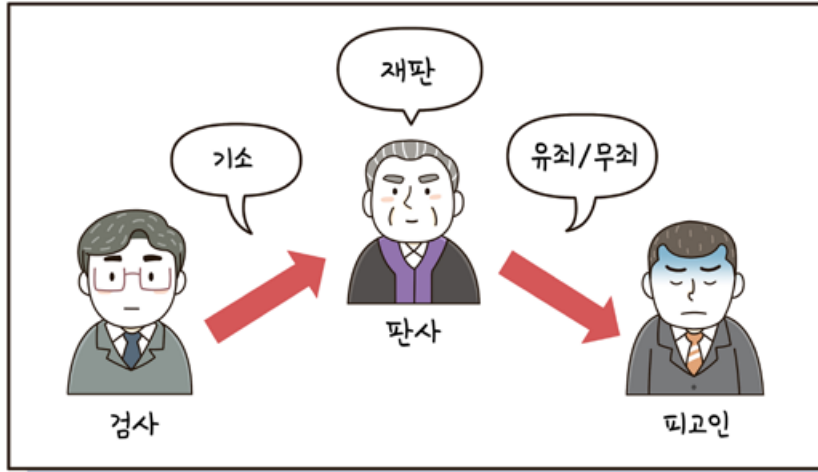
검사가 범죄로 판단할 경우

법원에 재판 청구
(기소 또는 공소제기)

검사가 범죄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끝냄
(불기소처분)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사는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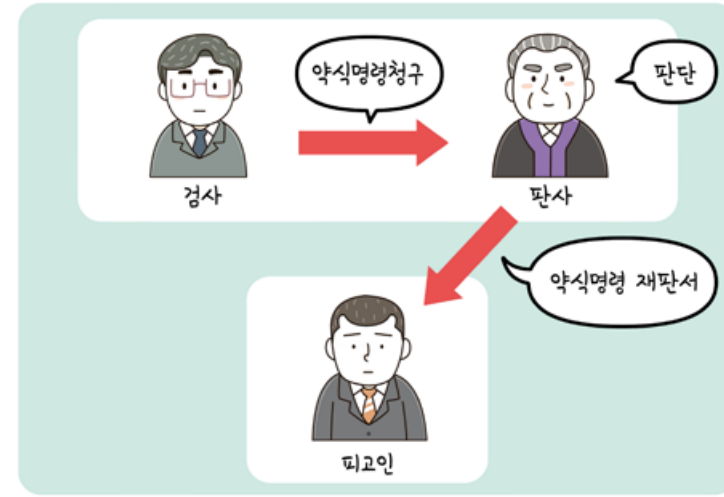


다만, 검사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는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하도록 법원에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를 약식명령청구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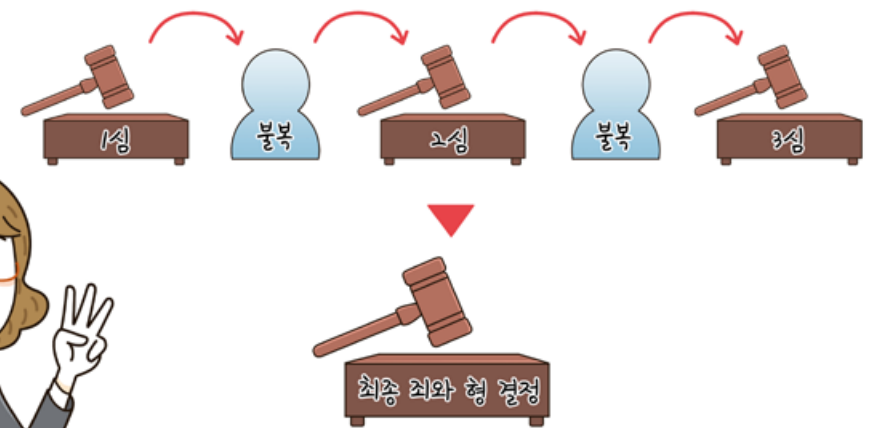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아 조사를 받을 때는 피의자,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피고인 이라고 부릅니다.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요구하면,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본 후, 그 처벌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에게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 재판서를 우편으로 피고인의 집에 보냅니다.



* 법원의 약식명령이 부당하다 생각할 경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보낸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정식재판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3심제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3심제라 합니다. 죄가 인정되면 피고인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고소, 누가, 어디에, 어떻게?

누가?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측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



어디에?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합니다. 피고소인(고소당하는 사람)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소인이 사는 곳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가서 고소장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적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적으면 됩니다.

고소하는 사람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직업 :

고소할 사람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직업 :

인적사항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해 내용 처벌 의사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 ○. ○. ○○:○○경 ○○시 ○○구 ○○길 ○○번지 소재 고소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에 들어와서 공연히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고소인이 말리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라며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어 고소하였으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진단서	1봉
2. 목격자 진술서	1봉

피해사실 증명 서류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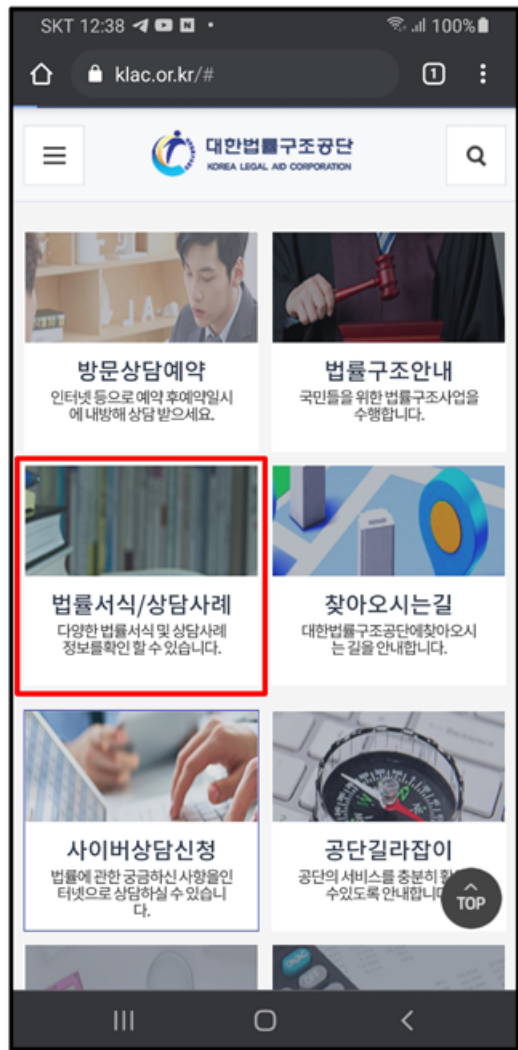
피해사실을 증명할 서류(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다친 부위 사진 등)를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되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 사이트(<https://www.klac.or.kr>)에 접속하여 법률서식 코너에서 견본 고소장을 참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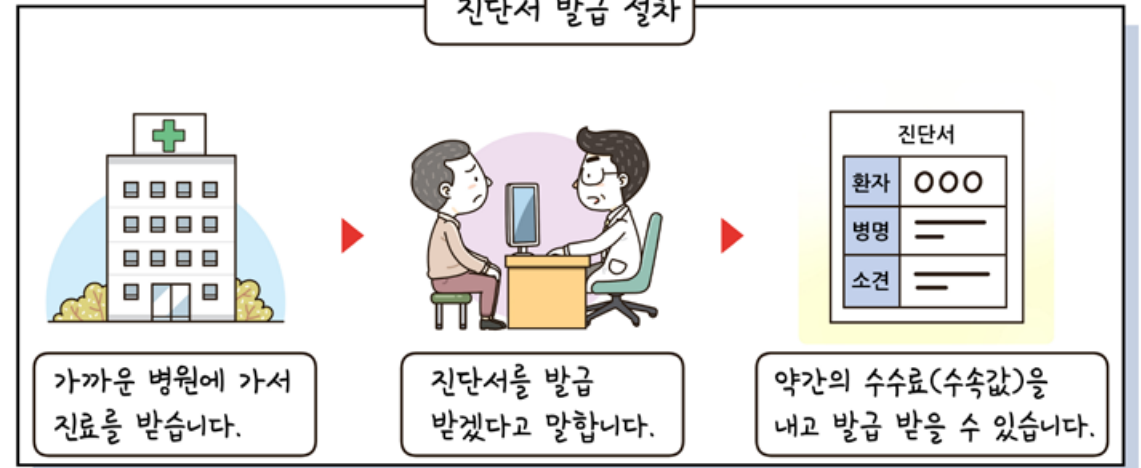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



○ 진단서 발급에 관하여

진단서는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진단서를 발급받겠다고 알리면 약간의 수수료(수속값)를 내고 발급해줍니다.

진단서 발급 절차



피해사실을 증명할 서류(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다친 부위 사진 등)를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되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피의자로 조사받을 경우 주의사항

대충 답변하면 안 돼요!

경찰이나 검사가 귀하에게 질문하면, 그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질문에 대충 답변할 수도 있는데, 이는 매우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변호인과 함께 하세요!

나를 도와줄 변호인(변호사)이 있다면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법률 전문가이므로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

- 전화 상담 : 1577-6635 / 02-3215-5837
- 온라인 상담 : www.koreahana.or.kr

대한변호사협회

- 전화 상담 : 02-2087-7731
- 온라인 상담 : www.legalaid.or.kr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전화 상담 : 02-3476-6515
- 온라인 상담 : www.legalaid.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2
- 온라인 상담 : www.klac.or.kr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부담이 된다면 다음의 기관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받기 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사를 받을 경우, 때로는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진술거부권이라고 합니다.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하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세요!

조사를 마친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서에 귀하가 진술한 내용이나 의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자가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귀하는 조서에 서명(수표)·날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피 의 자 신 문 조 서

피 의 자 : ○○○

위의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 00:00 ○○○에서 사법경찰관 ○○○○(은) ○○○을 참여 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한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 주민등록번호는 000000-000000, 직업은 ○○○, 주거는 ○○시 ○○동 ○○로 ○○, 등록기준지는 ○○○구, 연락처는 000-0000-0000 입니다.

문 : 피의자는 00월 00일 00시,

답 : 네, 저는



○ 구속의 의미, 구속 후 절차, 석방방법

구속이란 수사기관이 법원(재판소)의 허락을 받아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붙잡아 구치소나 유치장 등의 장소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의 조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 피의자가 도망하였다거나 도망할 것으로 염려되는 경우,
-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 일정하게 사는 곳이 없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때,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구속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는 법원의 허락을 미리 받아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영장청구를 하면, 법원이 이를 허가할지 판단하고(영장실질심사), 구속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급하고, 그 때 구속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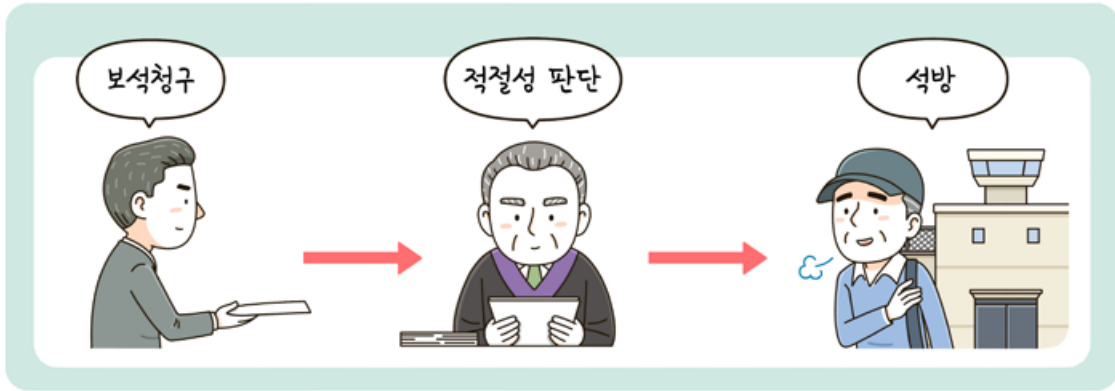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나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를 구속적부심사청구라고 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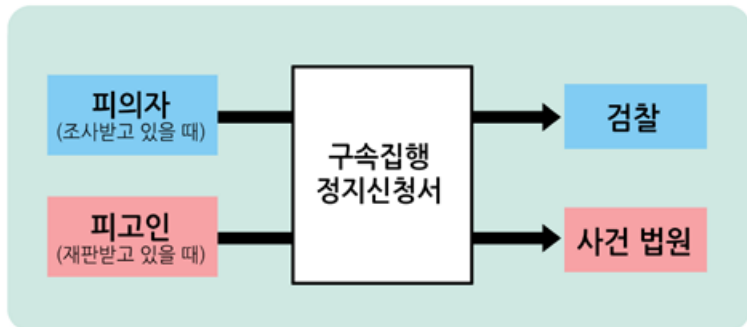


피의자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등이 구속을 허가했던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

재판을 받는 중에도 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청구라고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허가합니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가까운 가족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찰이나 법원은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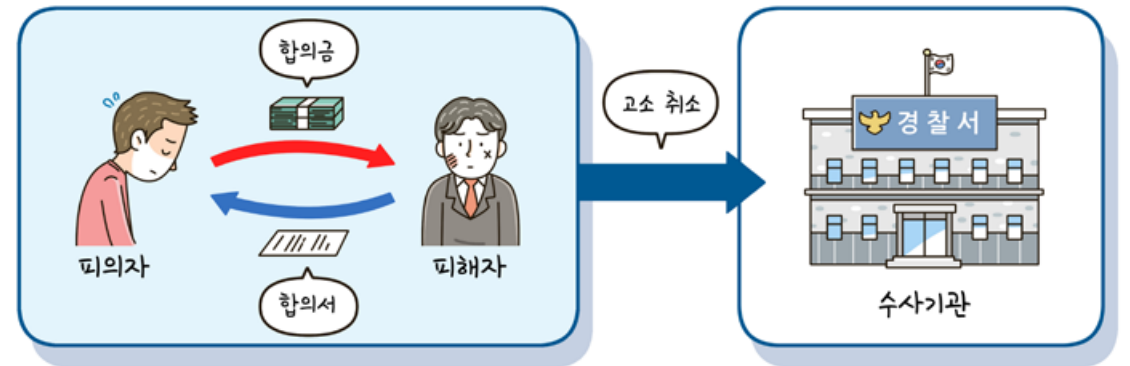
이 때 피의자는 검찰에, 피고인은 해당 사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전체 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변호인 선임권), 변호인과 자유롭게 만날 권리(변호인 접견 교통권)가 있습니다.

○ 형사합의의 절차 및 주의사항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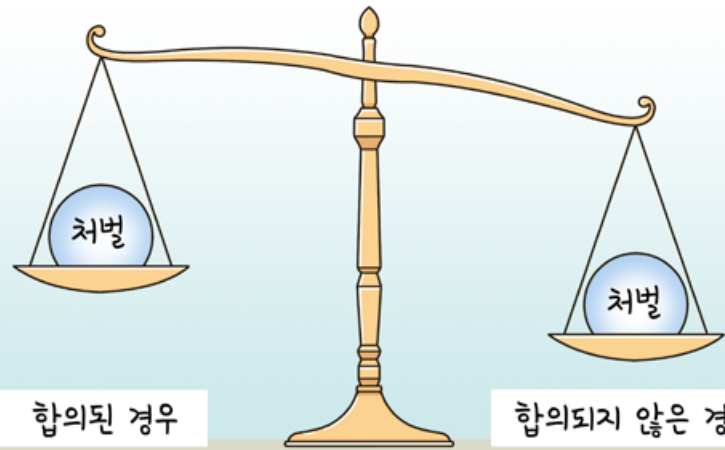
피해자는 피해의 배상이나 용서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를 **합의**라고 하고, 합의할 경우 보통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배상차원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서, 합의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합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얼마나 무겁게 처벌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참고사항이 됩니다.
만약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을 하게 됩니다.



폭행죄, 명예훼손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나,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는,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고소 취소장**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제출하면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요구하여 합의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적절한 합의금을 법원에 맡겨서 보다 가벼운 처벌을 호소하는 것이 좋은데, 이를 공탁이라고 합니다.

공탁(供託)



수사단계라면 피해자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한 후 공탁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재판단계라면 해당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합의금액은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피해자와 합의할 때, 합의서에 **“향후 민사상, 형사상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1심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판받을 때의 주의사항

법원(재판소)은 다툼이 있을 때에 재판을 통해 다툼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에서는 질서와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을 잘 듣고 이해하여야 그에 대해 분명하게 답변하고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만 앞세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거나 모독하는 말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퇴장명령 또는 감치

법정에서 폭력적인 말을 하거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그 사람을 법정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감치(일정한 기간 동안 가두어 두는 것)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자기변명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만 하는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공손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보이는 게 좋고,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재판이 있는 날(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급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

공판기일에 법정에 참석 안 함

연락이 되지 않음

구속영장 발급 가능!!

그리고, 사는 곳이나 전화번호가 바뀌는 경우 반드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아 피고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로 겪었던 **‘폭행 및 상해’**와 관련한 각종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단순 시비로 가볍게 싸워 다치지 않는 경우

“시비 거는 사람을 때렸는데도 처벌을 받는다고??”



동네 술집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은 파출소로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저와 상대방은 경찰에게 별 일 아니니 그냥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로 싸운 일로 처벌 받나요? 파출소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폭행죄(다쳤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께서 술집의 손님과 싸웠으나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됩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도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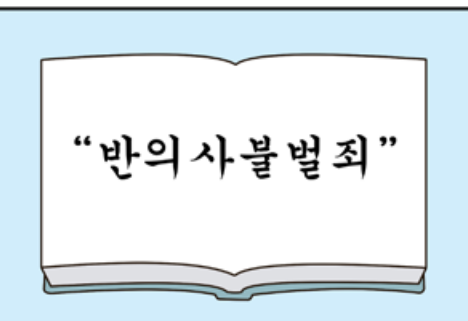


처벌을 원하시나요?

아니요.

이러한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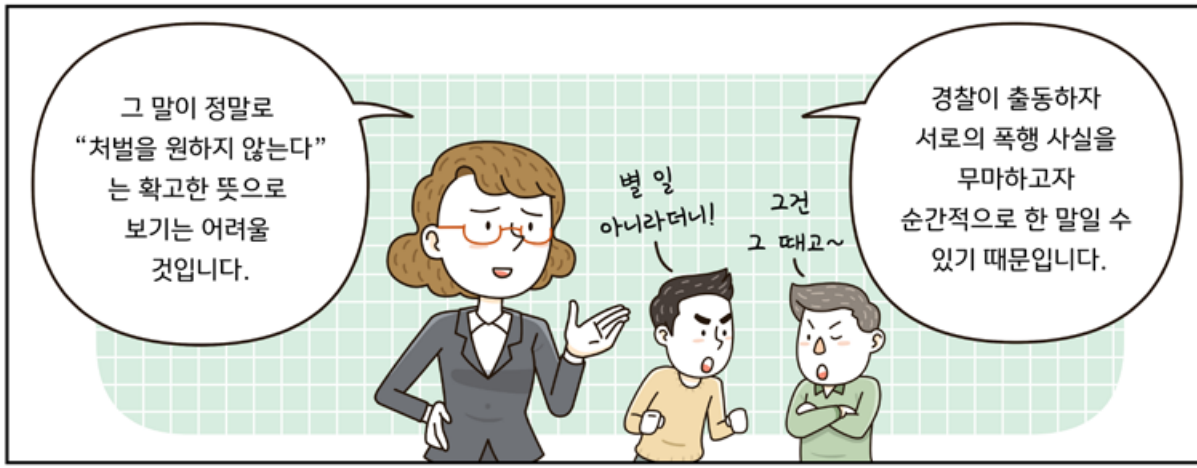


당사자들이 경찰에게 별 일 아니라고 했다는 것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별 일 아니에요.

당사자들이 경찰에게 별 일 아니라고 했다는 것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사례2.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위험을 느껴 소주병으로 내리친 건데, 그렇게 심하게 처벌받나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상에 있던 남성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저희 테이블로 다가와 맥주병으로 탁자를 내리쳐 깨뜨렸습니다.

위험을 느낀 저는 먼저 옆에 있던 소주병으로 그 남성의 머리를 내리쳐 그 남성은 머리가 2센티미터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당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처벌받나요.

귀하는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란 2명 이상이 함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행위를 하였을 때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귀하가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의 머리를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행위는 “**특수상해죄**”가 됩니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징역

특수상해죄는 돈으로 벌을 받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면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만약 상해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구 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 이르게 되면 그 처벌은 더 강해집니다.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처벌과 별개로 치료비, 일하지 못한 날 만큼의 수입,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인 위자료 등 상당한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치료비”
“일실 수입”
“위자료”

귀하는 상대방의 나쁜 행위에 대하여 교양을 가르쳐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의도가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처벌 받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법을 위반하는 범죄라면 그 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서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게 해야지,

워워-

자신이 직접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정도는 교양 목적으로 괴롭히거나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여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남한의 법질서와 법문화를 잘 몰랐을 것이고,

① 남한의 법질서와 법문화를 잘 몰랐다.

② 다른 사람을 때린 경우가 처음이고
③ 심하게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① 남한의 법질서와 법문화를 잘 몰랐다.
② 초범(처음 저지른 범죄)이다.
③ 피해가 크지 않다.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선고된 형이 더 이상 효력이 없도록 하는 처분(집행유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선고 내용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면, 행위는 징역 1년 형에 해당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시간을 보내면 “징역 1년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음 > 징역 1년형을 집행하지 않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 폭행으로 상해가 일어난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상해는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단순상해	특수상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	징역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벌금형도 형사처벌로서 소위 **"전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집행유예도 전과자가 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과거 형사범죄 기록이 남게 됩니다.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대상자: ○○○○-○○-○○

조회결과: ○○○○-○○-○○

경찰청장

또한, 다음에 또 그런 죄를 짓게 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

실제로 교도소에서 형을 살아야 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이 나왔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게요.

사례3. 형사처벌을 받은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 다시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이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김씨는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탈북민이고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얼마 전에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비가 붙어서 **유리잔으로 사람을 치는 일이 발생했고 상대는 전치 4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어떻게 되나요?

누범 또는 상습범으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누범이란 금고(노동을 하지 않는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 (累犯)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는 일

누범의 형은 법에서 정해진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반성의 기미 없이 또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비난의 정도가 높아지므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

죄질이나 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다음에 지은 죄의 경우 **법에서 정한 형벌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벌의 **2배**까지 가중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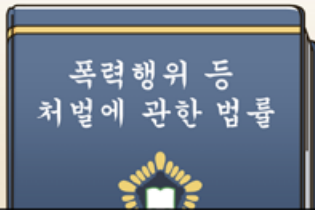
한편, “상습범”은 상습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질러서 그러한 범죄의 습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통상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1/2까지 형이 가중되나,

자체검열!

“상습상해범”에 대하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상습특수상해범”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김씨는 과거 초범이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남한의 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형을 받았으나,



유예기간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특수상해죄를 범했으므로 **누범**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편, 김씨의 연령, 직업,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장소,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특수상해의 습관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수상해 상습범**으로서, 매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죄를 짓더라도 다음에 다시 죄를 범하여 누범이나 상습범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4. 다른 사람에게 맞아 다친 경우

“다른 사람이 나를 때려 다쳤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들과 저녁을 먹다가 옆 상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말렸을 뿐인데, 옆 상 사람이 저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제가 많이 다쳤습니다. 저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폭력을 휘두른 사람을 **상해죄로 고소**하고, 이와 별개로 **법원(재판소)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해죄로 고소한다고 내가 입은 경제적인 손해(치료비 등)를 당연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민사사건



형사사건이란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국가가 처벌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형사사건

형법 등 처벌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혐의를 의심받아 수사기관이 이를 조사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벌금이나 징역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되는 사건



민사사건이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 받으려고 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민사사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회복 받으려는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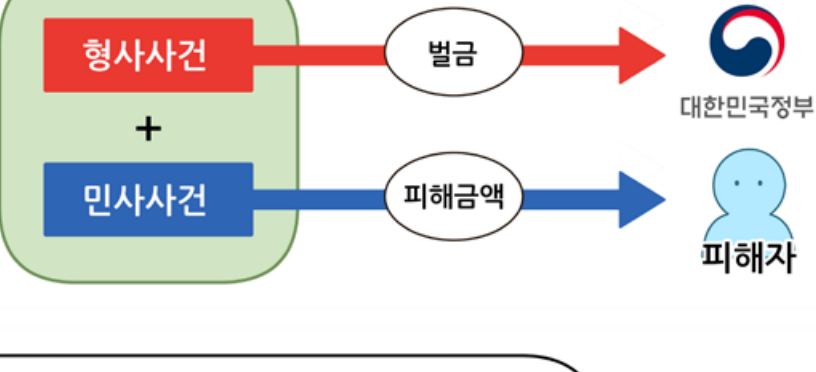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 그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건



하나의 사건이 민사사건이면서 동시에 형사사건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로써 벌금을 내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기죄-피의자



사기죄로 돈을 떼었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가해자에게서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국가가 법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법원에 귀하가 입은 피해금액을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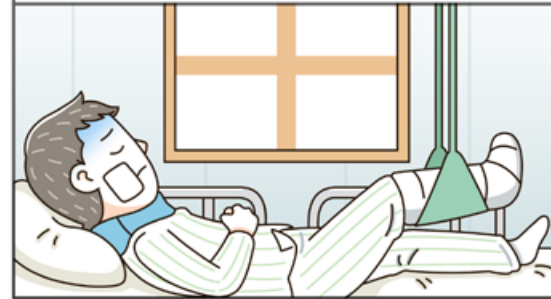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피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

- ① 상대방의 폭력으로 귀하가 다쳤고
- ② 다친 부위를 치료하느라 돈을 썼으며,
- ③ 일을 하지 못한 손해도 발생했고,
- ④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치료비**는 물론 **일실수입**(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정신적 손해 배상금)를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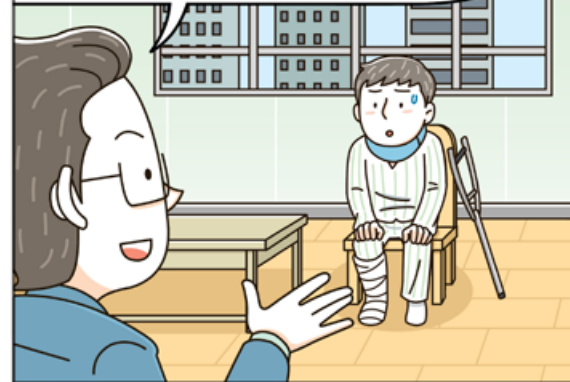
이것이 **민사사건**입니다.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법원에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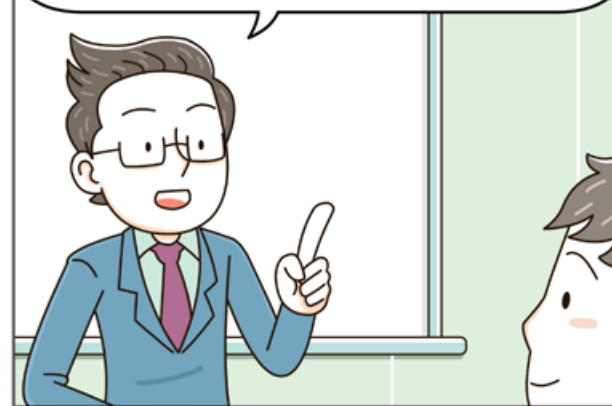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형사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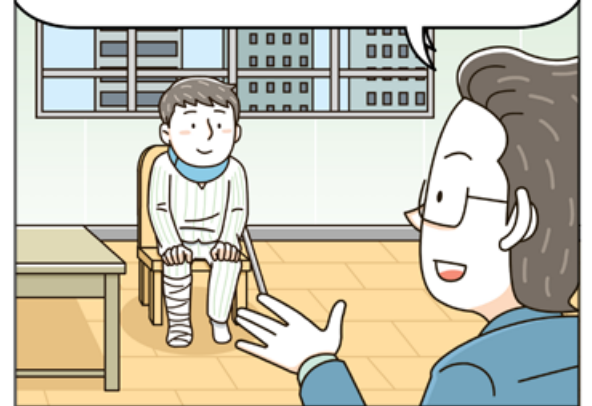
한편, 귀하가 다쳤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의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상해 및 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만일 사고가 주말에 발생했다면 주말에 정상진료를 하는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응급실만 운영한다면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치료를 받은 후, 평일에 다시 한 번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지 않더라도, 형사판결의 결과를 가지고 **민사재판**을 별도로 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지, 얼마에 합의를 해야 하는지 등은 사안에 따라 다르고 법률적으로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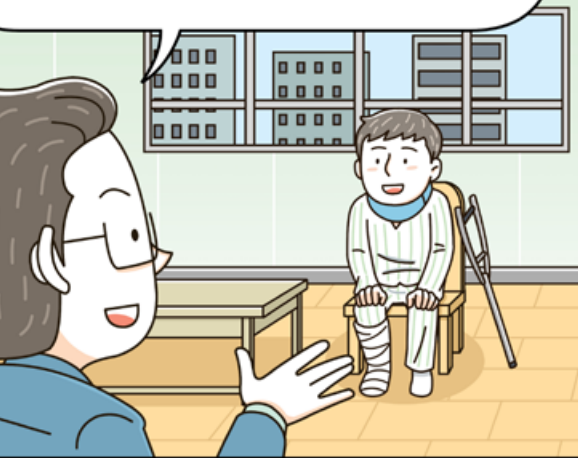
만일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된다면...

다음의 기관에 연락하여 법률상담을 받거나,



- 남북하나재단** | 전화 상담 : 1577-6635 / 02-3215-5837
온라인 상담 : www.koreahana.or.kr
- 대한변호사협회** | 전화 상담 : 02-2087-7731
온라인 상담 : www.legalaid.or.kr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전화 상담 : 02-3476-6515
온라인 상담 : www.legalaid.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2
온라인 상담 : www.klac.or.kr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재판 등을 진행할 수 있으니, 그곳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위 기관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원교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의 내용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마약 관련 범죄

마약류 불법 처리 등에 따른 법률 문제

마약을 운반만 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는다고요?



마약 관련 범죄

- 마약류 불법 처리 등에 따른 법률 문제 -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

1. 마약은 사용해서도 안 될뿐 아니라 소지하고(타인의 것일지라도) 있기만 해도 범죄가 됩니다.
2. 마약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운반) 해도 범죄가 됩니다.
3. 마약은 본인이 전혀 손대지 않고 사거나 팔기만 해도 범죄가 됩니다.

○ 마약류 불법 처리 등에 따른 법률 문제



마약 관련 범죄는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남한에서는 절대 마약을 사용하면 안 되며 소지만 하고 있어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고 심부름(운반)만 했다고 해도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양귀비, 아편, 코카잎, 필로폰, 헤로인,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마약류에 해당하여 그 취급이 매우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또한, 마약류와 마약류 판매 등으로 인해 번 돈은 모두 국가가 압수하고(몰수)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신 내라고 명령을 합니다(추징).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마약류를 만드는 것, 팔고 사거나 알선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경우, 대마를 만들거나 사고팔거나 사고파는 것을 알선한 경우, 대마를 재배하거나 지니거나 가지거나, 이를 운반·보관·사용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은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고, 이를 운반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파는 행위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을 만들거나, 사고파는 것, 사고파는 것을 알선	대마를 만들거나, 사고팔거나, 사고파는 것을 알선	대마를 재배하거나, 지니거나, 가지거나, 이를 운반, 보관, 사용
1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 그럼,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로 겪었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마약 관련 범죄”**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마약을 흡입한 경우

“마음이 불안해서 히로뽕을 한 번 흡입했는데, 그것도 처벌받나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심각한 불안 증세를 겪었습니다. 그 때마다 누군가가 주는 약을 먹곤 했는데, 그러면 감쪽같이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히로뽕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한 입국 후에도 그 약을 찾게 되었고, 얼마전 휴대전화 인터넷에서 "히로뽕 팝니다", "안전 보안 최우선" 등의 글을 보았고, 그곳에 연락하여 돈을 주고 히로뽕을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처벌받나요?

히로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으로서 **이를 흡입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컴퓨터나 휴대폰의 SNS 채팅을 통해 판매 조건을 확인하고 통장에 대금을 송금하면, 공급책은 미리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를 온라인 지도에 표시해 구매자에게 보내고,

구매자는 해당 장소에서 마약을 찾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히로뽕 팝니다◀◀
 ★절대 안전 보장★ 믿
 아이디 : XXvPiio 로 돈
 100% 연결 가능

■서울·경기 지역■ 입금 후
 1시간 내 수령, 깨끗한 상품,
 ▶▷절대 안전, 무사고◀◀

수도권 빠른 거래 가능,
 쉼 좋습니다. 안전보장
 ★퀄리티 보장★



마약 흡입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폭행 및 상해>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조사에 응하시길 권합니다.

<폭행 및 상해>
 “수사사건의 처리절차”
 “피의자로 조사받을 경우 주의사항”

<폭행 및 상해>
 “재판받을 경우 주의사항”

조사를 받는 경우 참고

재판을 받는 경우 참고



무엇보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앞에서 설명했던 다음의 기관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남북하나재단**
 - 전화 상담 : 1577-6635 / 02-3215-5837
 - 온라인 상담 : www.koreahana.or.kr
- 대한변호사협회**
 - 전화 상담 : 02-2087-7731
 - 온라인 상담 : www.legalaid.or.kr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전화 상담 : 02-3476-6515
 - 온라인 상담 : www.legalaid.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2
 - 온라인 상담 : www.klac.or.kr

사례2. 마약을 운반한 경우

“선배의 부탁으로 마약을 나르기만 했는데 처벌받나요?”



모임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 형이 좋은 담배가 있다며 말아놓은 담배를 건네주어 피웠는데 대마초였습니다.
저는 대마초를 피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제게 대마초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면 판매가격의 10%를 대가로 주겠다고 합니다. 매달 평균 2,000만원은 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피는 것이 아니고 전달만 하는 것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도 처벌받나요? 저는 어떻게 되나요?



대마임을 알고 운반했으므로 처벌받게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대마를 최초로 핀 것은 고의로 흡연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벌받지 않으나,

운반한 경우는 대마임을 알고 한 것이므로 처벌받게 됩니다.

모르고 대마를
피운 행위
(고의 아님)

대마인지 알면서도
운반한 행위
(고의)

처벌!



그리고 운반으로 인하여 얻게 된 수익은 **국가가 압수**합니다.

헉!



처벌도 받고, 수익도 압수 당하면... 이득 될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위와 같이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는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므로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
강력 처벌!**



직접 피우지 않고 운반만 하는 것이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니 절대 속아선 안 됩니다!

네!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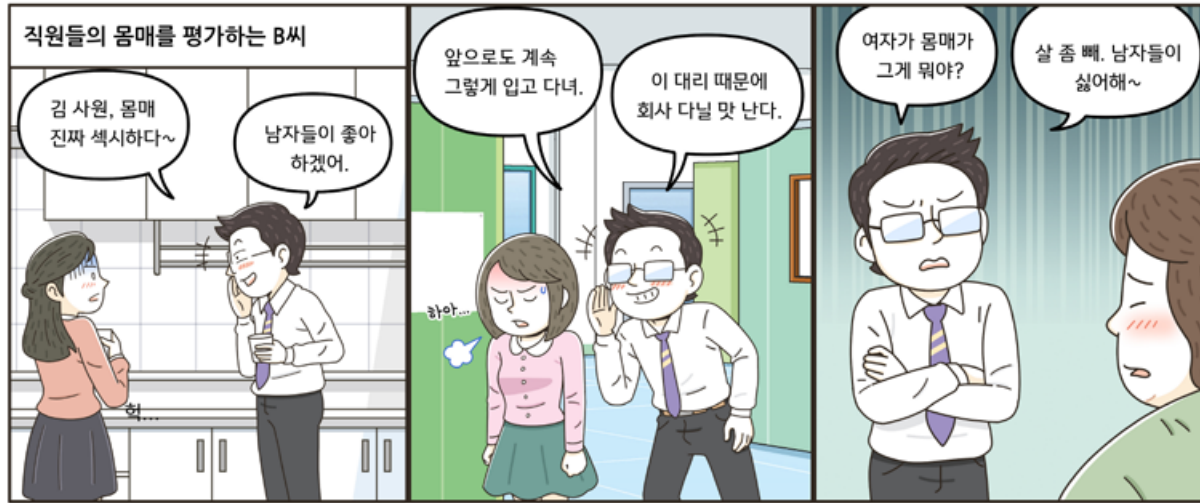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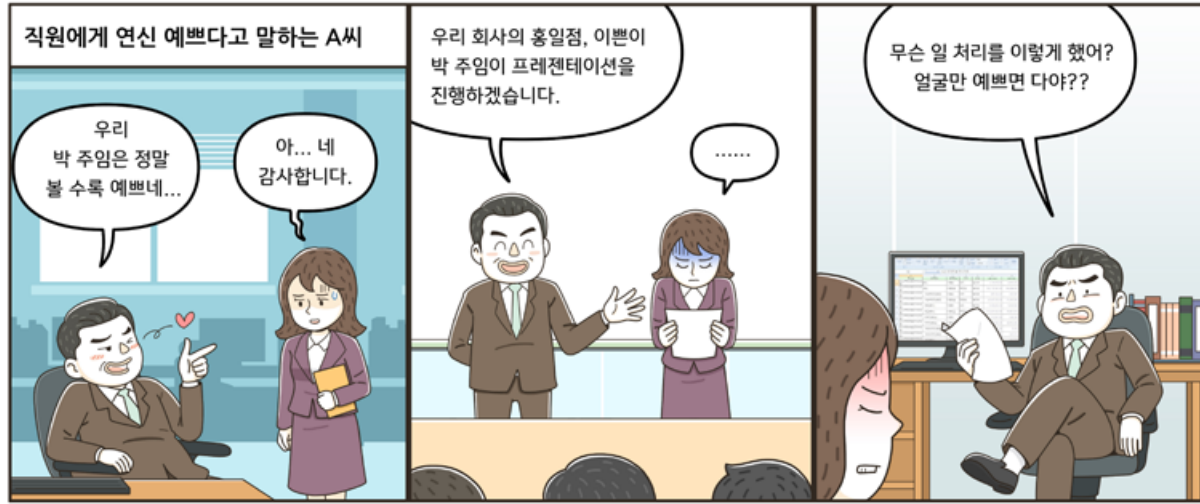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 | 03

성 관련 범죄

성폭력의 개념과 그 처벌

예쁘다고 칭찬했을 뿐인데,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요?



성 관련 범죄

- 성폭력의 개념과 그 처벌 -



이것만은 꼭! 알아둬시다!!

1. 성 문제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이 불쾌하면 문제가 됩니다.
2. 성범죄는 엄한 처벌을 받으며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입니다.
3.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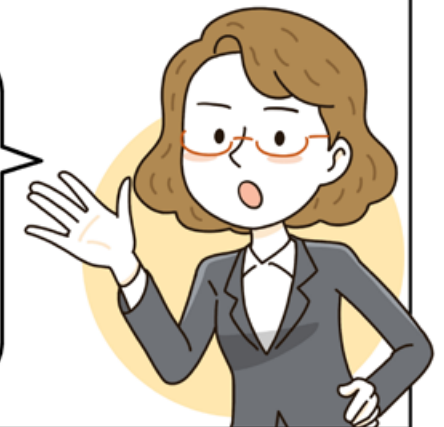
○ 성폭행의 개념과 그 처벌



성폭력이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거나, 싫어하고 거부하는데도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에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어떤 사람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말을 하여 그 사람이 성적으로 부끄럽거나 불쾌한 느낌을 갖게 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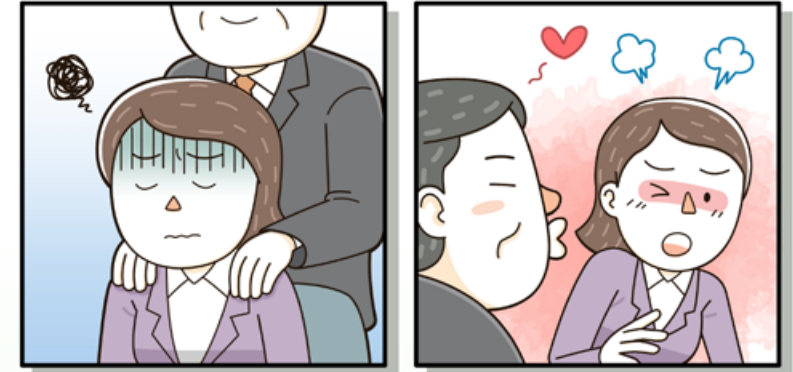
야한 농담을 하거나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의 성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행위, 여성의 성적인 내용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행위, 성관계를 갖자고 억지로 요구하거나 조르는 행위 등은 모두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다만 성희롱은 성폭행이나 성추행과는 달리 범죄로 처벌하지는 않고,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성희롱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배상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성추행”이란 상대가 싫다고 하는 데도 상대방의 몸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으로 그 상대방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비록 성교를 하지 않아도, 남성이 여성의 몸에 손을 대거나 허락 없이 만지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리거나 협박하여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이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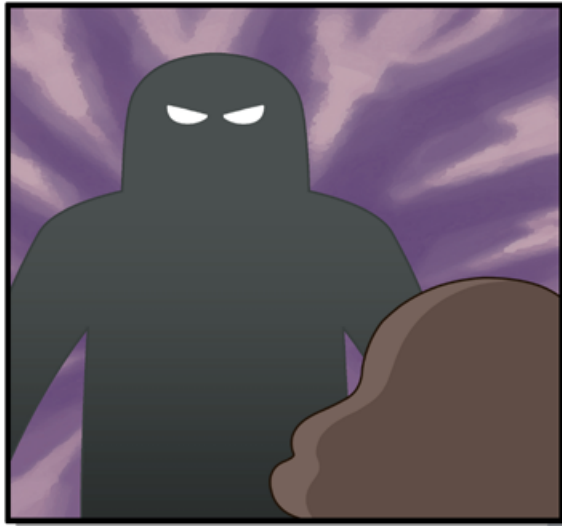
강제추행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면 “강제추행상해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가 되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행”이란 강간, 강간 미수 등을 뜻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싫다고 하는데도 힘으로 때리거나 위협해서 강제로 성교를 한 경우, 3년 이상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에도 만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교를 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면 “강간상해죄” 또는 “강간치상죄”가 되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벌을, 친척이나 장애인, 13살 미만 어린이 등을 강간할 경우 훨씬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성희롱인가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 사랑 표현은 죄가 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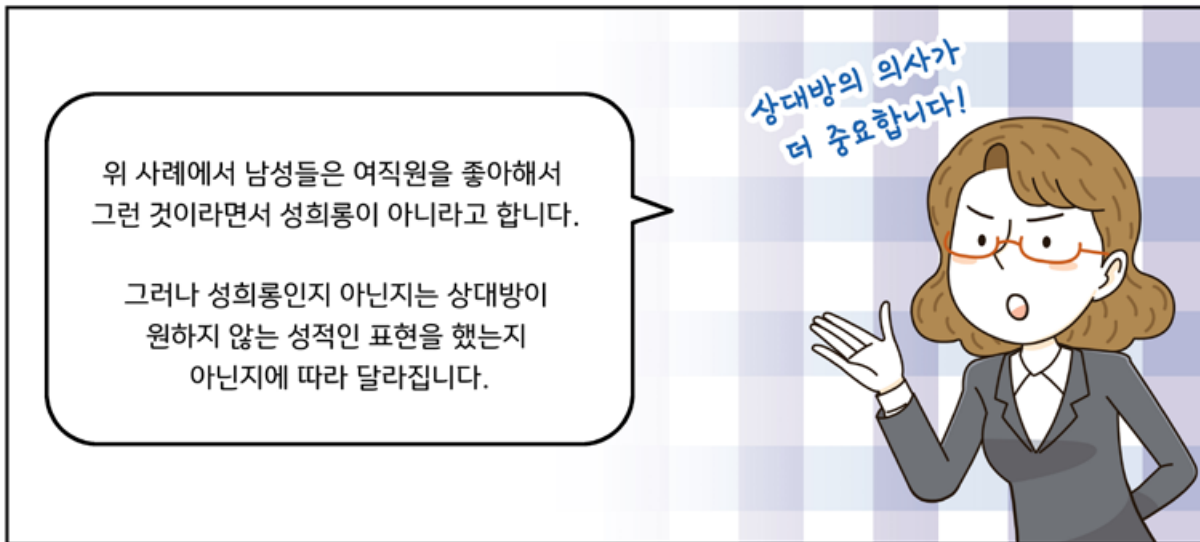
아래의 예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 1)



예 2)



사례2. 연애하거나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남성 애인이나 남편이라 해도 강제로 성교를 하면 강간죄가 됩니다.”

아래의 예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 1)



예 2)



위의 사례들은 모두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죄”

강간죄는 연애하는 사이, 부부 사이에서도 성립합니다. 여성은 자신이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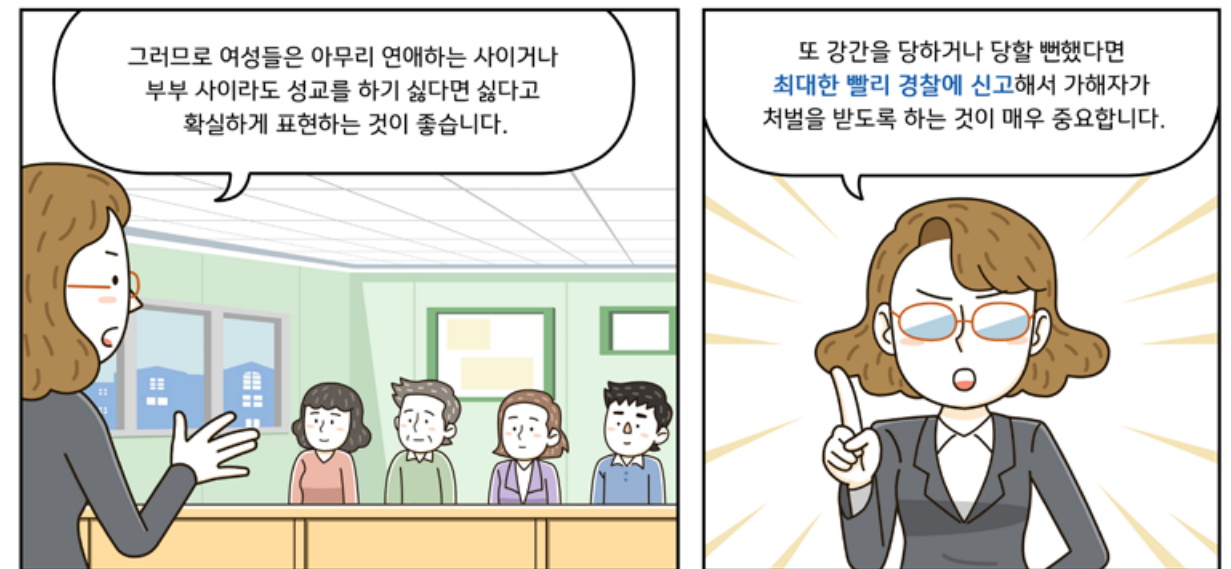
따라서 애인이나 남편이라도 성관계를 억지로 요구해서는 안 되며,

때리거나 욕을 하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역시 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아무리 연애하는 사이거나 부부 사이라도 성교를 하기 싫다면 싫다고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강간을 당하거나 당할 뻔했다면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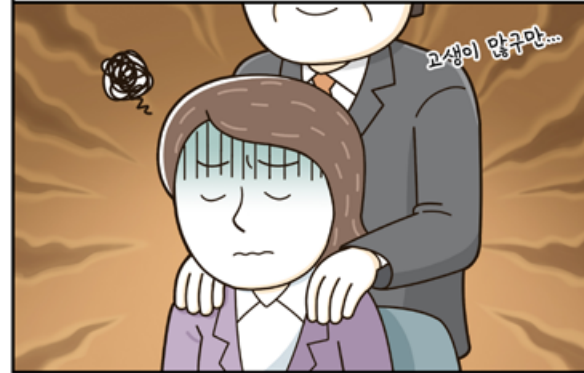
사례3.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한 것도 성희롱이 된다고요?

“여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남자 몸을 만지게 하면 ‘강제추행죄’예요.”

육체적 성희롱 행위란 여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몸을 닿게 하거나 여자의 몸을 만짐으로써 여자에게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는 행위
- 남자가 여자에게 몸을 주물러 달라고 하거나 남자가 여자의 몸을 주무르는 행위



- 같이 춤을 추자며 어깨, 허리 등을 만지는 행위
- 술자리에 같이 가자며 여자의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일하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얼굴을 지나치게 가까이 들이대는 행위
- 여자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 일을 열심히 한다고 칭찬한다는 핑계로 머리카락 등을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



전부 육체적인 성희롱으로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 손금을 봐준다면서 손을 끌어당겨 손을 주물럭 거리는 행위
- 술에 취한 여자를 도와준다며 몸을 바짝 대는 행위



사례4. “몸매가 예쁘다”고 칭찬하는 것도 성희롱인가요?

“여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몸의 일부분에 대해 얘기하는 행위도 성범죄예요.”

야한(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성적인 느낌을 주는 상스러운 이야기를 말이나 전화나 문자 등으로 하는 것을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① 임신, 출산 등과 관련 등에 관해 성적인 상상을 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성관계를 뜻하는 모든 행위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② 여자의 얼굴이나 몸매에 관한 생각을 얘기하는 행위



딱 붙은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녀. 회사 다닐 맛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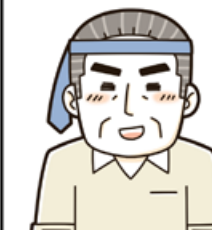
여자가 그렇게 똥똥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③ 개인의 성생활을 묻거나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행위



OO씨랑 사귀다면서?
어디까지 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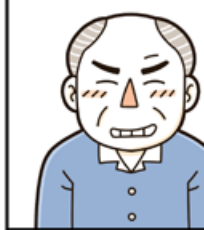
④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자주 조르는 행위



오늘 같이 있고 싶다.

피곤하지 않아?
잠깐만 쉬었다 가자.

⑤ 술자리 등에서 여자를 억지로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남자 상사 옆에 앉아야지
그런 것도 알려줘야 하나?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지.

⑥ 여자를 술 접대부로 대하는 행위



우리는 여직원이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갈 필요가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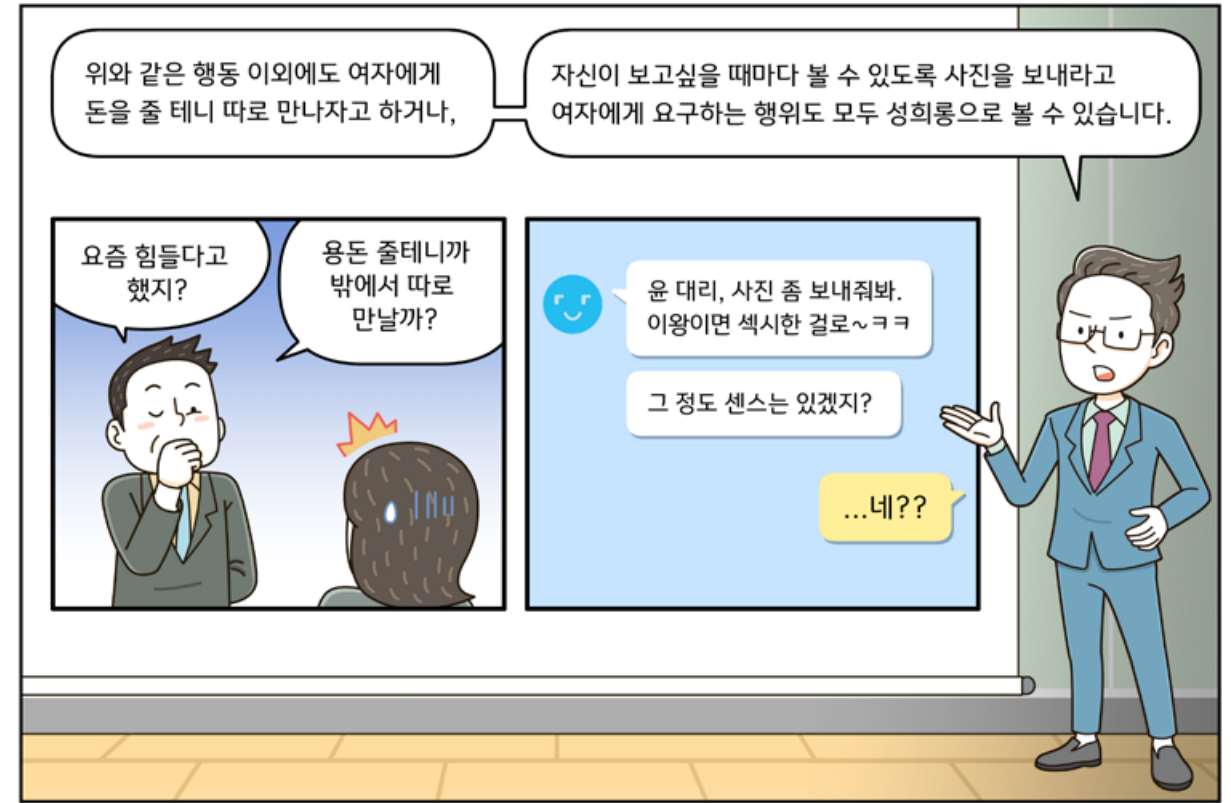
위와 같은 말들은 언어적 성희롱으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5. 여직원에게 다른 회사 남자 직원들과의 술자리에 꼭 오라고 명령하면?

“여성에게 원하지 않는 술자리나 다른 회사 남자 직원과의 식사에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성범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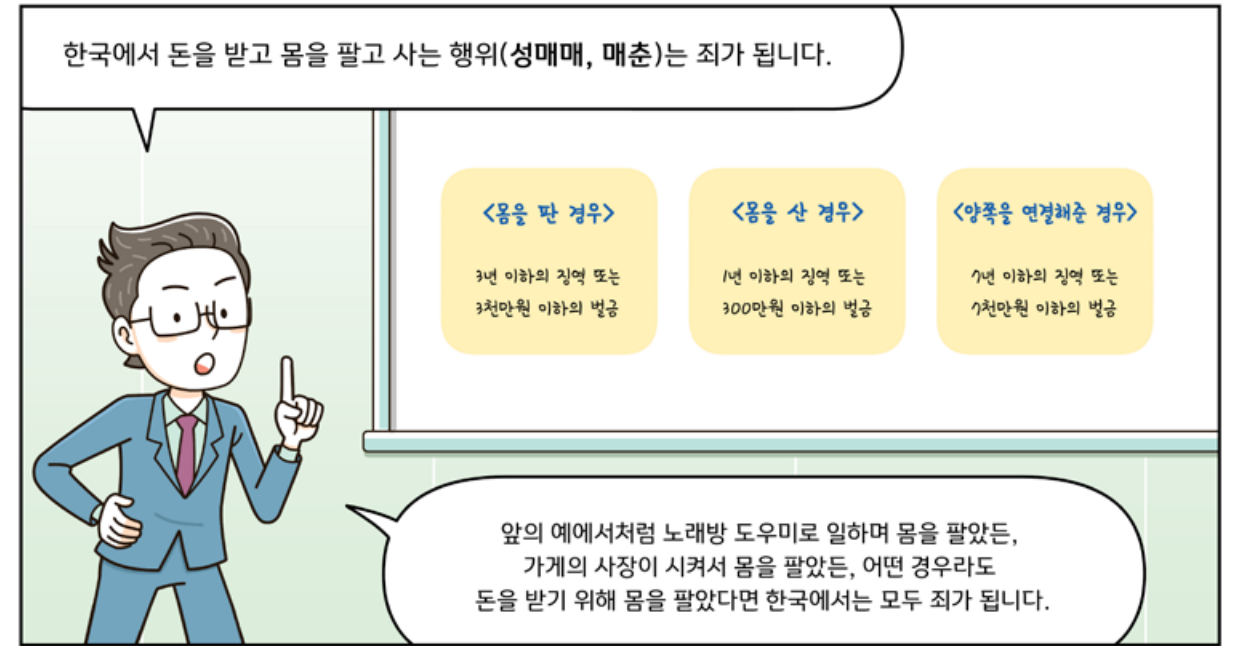
아래의 예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례6. 상대방과 자고 돈을 받았어요. 죄가 되나요?

“한국에서 돈을 받고 몸을 팔고 사는 행위는 모두 무조건 죄가 됩니다.”

아래의 예들은 문제가 될까요?



사례7. 유부남(녀)과 성관계를 맺었어요.

“절대로 불륜(부화행위) 관계는 맺으면 안 돼요.”



저 혼자만 국내에 입국한 후 유부남을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성관계도 맺었고
이미 1년 이상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 죄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유부남의 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줘야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죄**(가정파탄죄)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유부남과 성관계를 맺고 사귀다고 하여
국가로부터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법원은 불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그 부인이나 남편에게 일반적으로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벌금, 징역

손해배상금

하지만 그 유부남의 부인이 **민사소송**을 걸어 올 경우
매우 큰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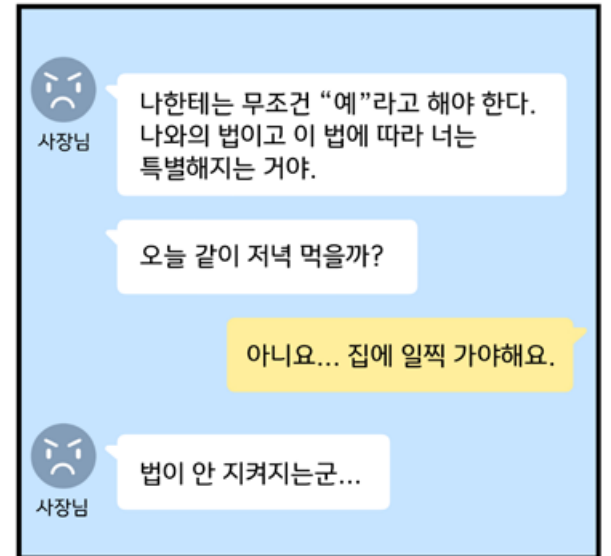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귀거나 성관계를 갖거나 함께 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사례8. 일하는 곳에서 성희롱 당한 경우

“절대 참지 마세요!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어요!”

아래의 예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위 예는 모두 실제로 일하는 곳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들입니다.

여직원들은 남자 상사들의 성희롱이 싫어도 이것을 표현하거나 신고할 경우 직장을 잃거나 직장 내에서 보복을 당하게 될까봐 그냥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끝나고 돌아 마로 술 마시러 갈까?
정씨, 자 안에서 해 봤어?
사원: 나한테는 무조건 "해"라고 해야 한다. 나랑도 없고 어떻게 저러 내는 특출하지는 거지
오늘 같이 재래 직용하?
사원: 아니요... 집에 일찍 가야해요.
사원: 밥이 안 지겨지는군...

하지만 망감음이 두려워 성희롱을 무조건 참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일하는 곳에서의 성희롱 가해자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남녀평등 고용법

또한 사장이 직접 직원을 성희롱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따라서 피해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례9.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해바라기 센터, 여성 긴급전화, 112, 경찰서에 최대한 빨리 신고하세요.”

17세의 최씨는 지인으로부터 겁탈을 당했습니다. 최씨는 신고 방법도 모르고, 성폭행 사실에 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고, 변호인을 선임할 돈도 없습니다. 최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각 지역에 있는 해바라기센터를 찾아가거나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보호 긴급전화 1388, 범죄 신고 전화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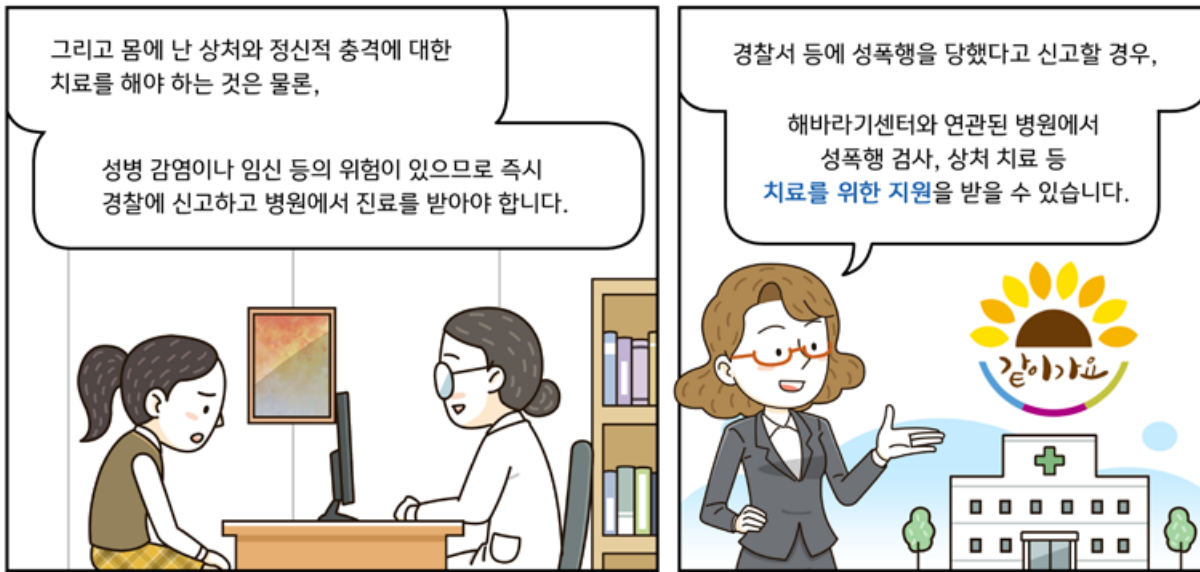
“**최대한 빨리 신고하세요!**”

그리고 우선 몸에 남아있는 범죄의 증거를 잘 모아두기 위해서

피해 직후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고 바로 병원이나 경찰서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법의학적 증거 확보! >

- ✓ 피해 직후 씻지 마세요!
- ✓ 옷을 갈아입지 마세요!
- ✓ 피해 장소를 청소하지 마세요!



그리고 몸에 난 상처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성병 감염이나 임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서 등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할 경우,

해바라기센터와 연관된 병원에서 성폭행 검사, 상처 치료 등 치료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의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처음 경찰에 얘기하는 순간부터 가해자가 재판받는 과정과 가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전혀 돈을 받지 않고 법률적 도움을 주게 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가 있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도와주는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를 낮게 하기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널 도와줄 거야. 절대로 너의 잘못이 아니야.

사례10. 성폭력 사건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폭력 재판은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주고 있어요.”



박씨는 직장 동료 한씨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한씨는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씨를 재판할 판사는 박씨에게 한씨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증언을 해달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한씨는 법원에 가서 한씨를 마주치는 것도 두렵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재판정에서 자신이 성폭행 당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폭행 사건의 경우 **사건과 관련된 사람 외엔 재판을 방청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의 경우 **사건과 관련된 사람 외엔 재판을 방청(구경)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 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 비디오 등을 통해 증언을 하거나,



피해자를 법원나오게 한다 해도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다른 통로를 이용하게 하고,

판사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판절차 내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Q&A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 | 04

명예훼손, 모욕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친 경우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 인터넷에 글을 쓴 것 뿐 이라고요!



명예훼손, 모욕죄

-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친 경우 -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

1.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인은 물론 연예인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1. 다른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고 소문을 낸 경우

“진실한 사실을 퍼뜨려도 처벌받는다구요?!”



김씨는 박씨가 결혼을 했음에도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김씨는 이 사실을 주변 동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이 경우 김씨는 처벌받을까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표현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인 명예(평판)를 해치는 행위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의할 점은,
내가 진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히 공익을 위한 경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박씨가 말야... 정말??

진실한 사실을 표현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친 경우,

거짓 사실을 표현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친 경우 모두 벌을 받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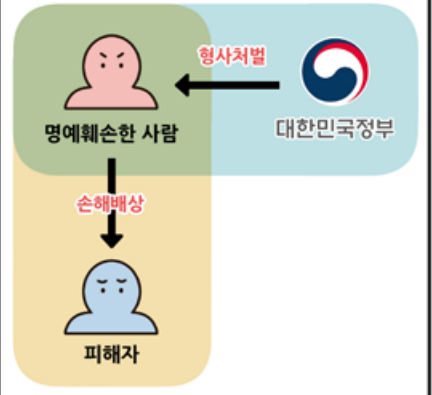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사례의 경우,
박씨가 바람을 피운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경우 박씨의 명예가 훼손되므로,
이는 **진실한 사실을 표현한 명예훼손**으로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한 것인데도 처벌을 받는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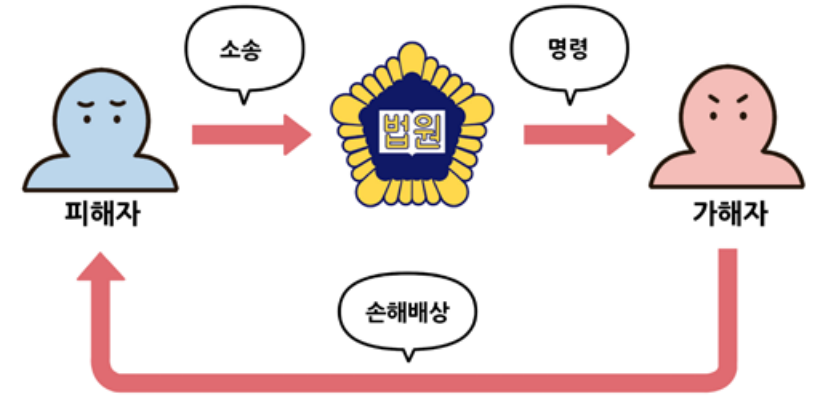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의 비밀이 알려졌을 때 받게되는 피해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국가로부터 형사처벌 받는 것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즉,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판단하여 그 피해를 돈으로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익적 내용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이라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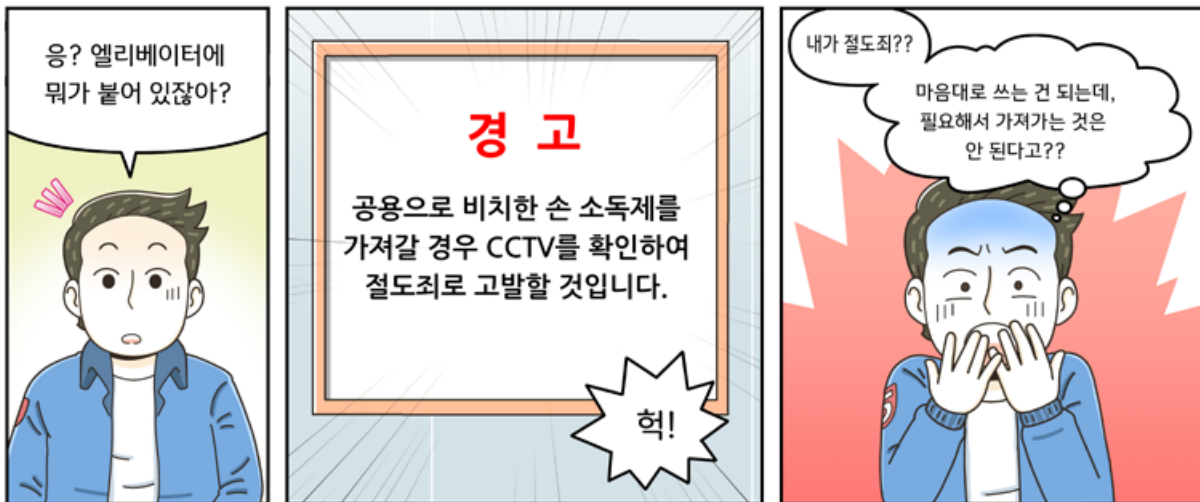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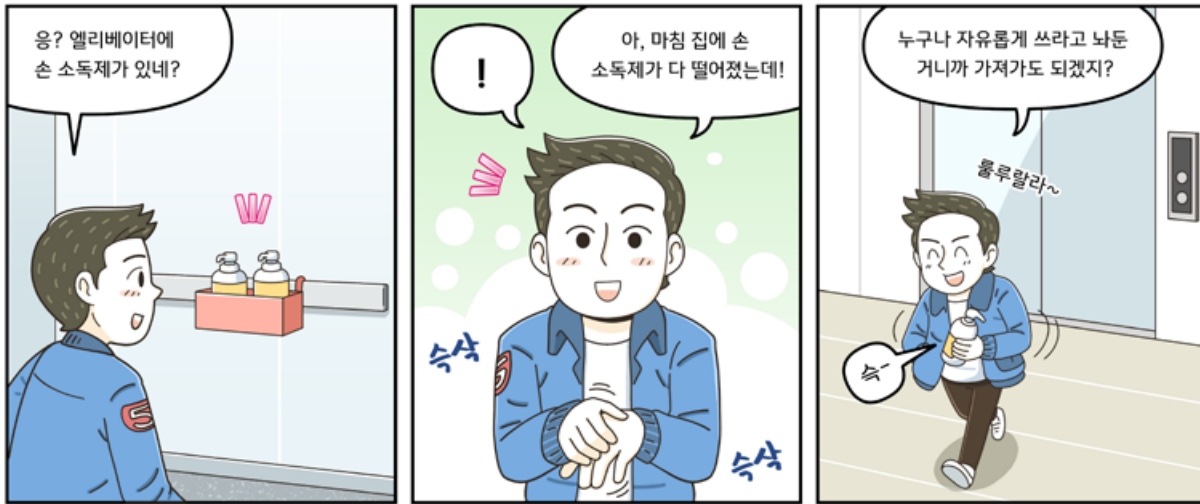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 | 05

절도 범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훔친 경우

마음대로 쓰는 것은 되고, 집에 가져가는 건 안 된다고?



절도 범죄

-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훔친 경우 -



이것만은 꼭! 알아둬시다!!

1. 타인의 재산이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공동의 물건도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 절도죄(개인재산훔친죄)에 관하여



절도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어 가는 행위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보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물건도 포함되므로, **공동의 물건도 함부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절도죄의 경우 처벌은?

절도죄를 범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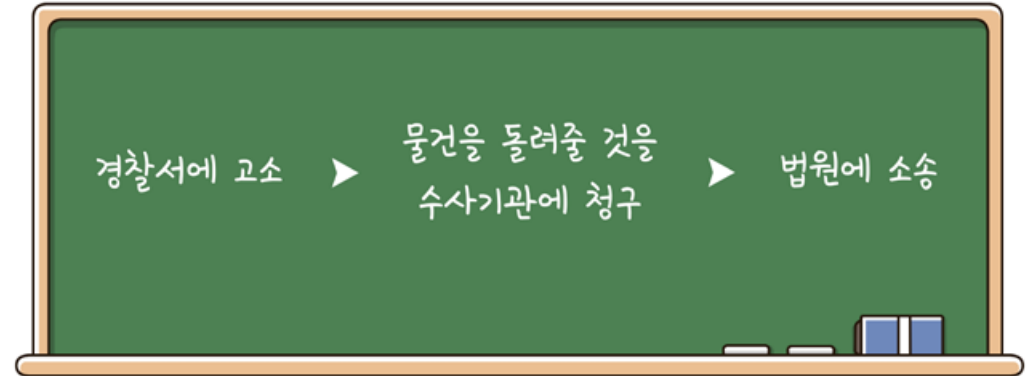
만일, 밤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물건을 훔친 경우,
밤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문 등 건물을 훼손하여
물건을 훔친 경우는 **특수절도죄**가 되어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의심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앞서 <폭행 및 상해> 부분에서 언급한
“수사사건의 처리절차” ~ “재판을 받을 때의 주의사항”
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가 **절도죄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면 됩니다.



- ① 물건을 훔쳐갔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경찰서에 절도죄 혐의로 고소.
- ② 범인이 훔친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 경우, 물건을 돌려줄 것을 수사기관에 청구.
- ③ 법원의 판결이 끝나면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절도로 인해 피해 입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송 제기.

그럼,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까요?



사례1. 놓고 있는 다른 사람 땅에 나무를 심은 경우

“놓고 있는 땅에 감나무를 심어 그 감을 먹어도 죄가 된다구요?!”



저는 북에 있을 때부터 유독 감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소유자가 따로 있는 집 주변 공터에 감나무를 심었고,
감이 열리자 이를 수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처벌받나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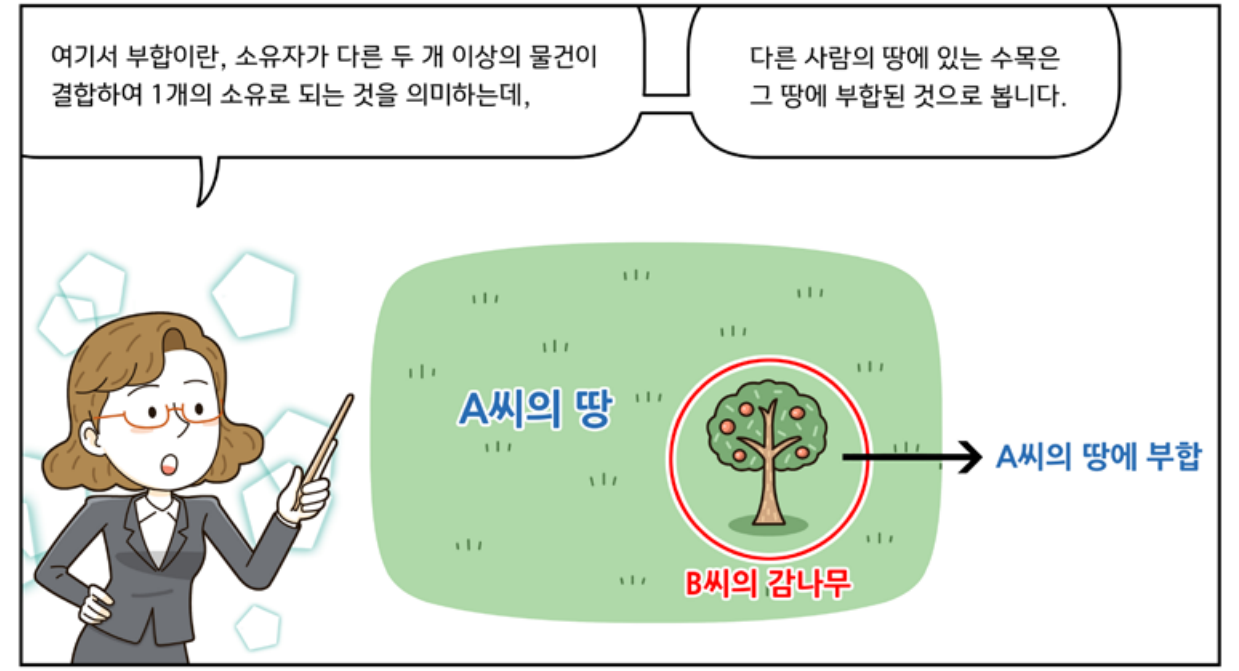


귀하가 직접 감나무를 심었고, 그 감나무에서 감을 따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 따르면 땅 주인은 그 땅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합이요?



여기서 부합이란,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소유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수목은 그 땅에 부합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땅 주인에게 그 땅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거나 사용의 비용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그 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귀하가 감나무를 심었다고 하더라도 감을 수확하면 절도죄가 됩니다.



헉, 네...

감나무의 소유권은 그 땅 주인에게 있고, 감도 땅 주인 것이므로 악한 의도가 없음에도 법률을 몰라서 범죄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2.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서 사용한 경우

“잠깐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뒀는데 그것도 죄가 되나요?”



정씨는 배가 고파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휴대전화를 식탁에 둔채 정신 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식당 주인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통화를 하고 1시간 뒤 주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식당 입구 옆 화단에 이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씨가 처벌받나요.



정씨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마치 자신의 것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할 뜻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불법영득의사**라고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1시간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고, 가지고 있으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며,

사용 후에도 화단에 휴대전화를 내버려 두고 갔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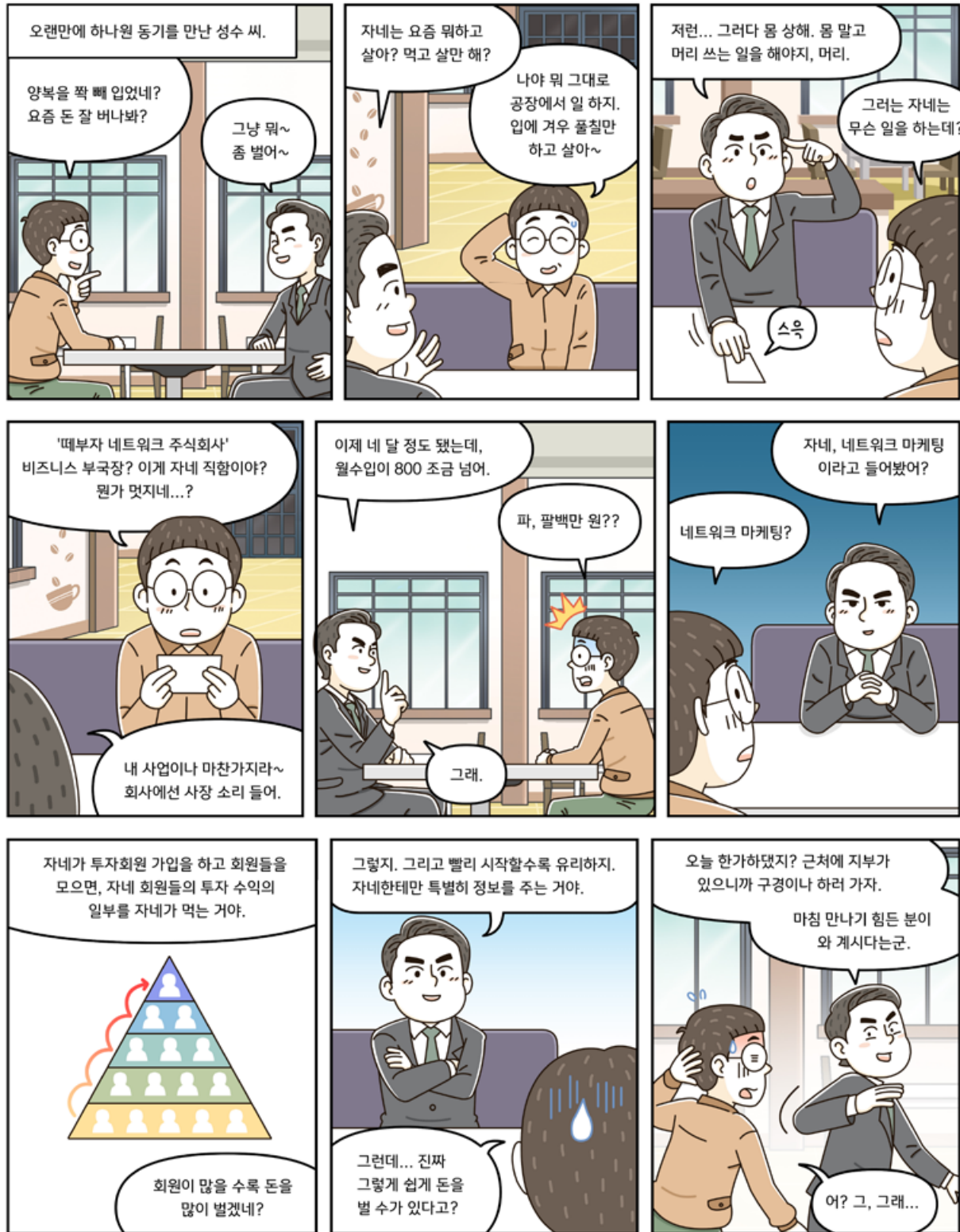
잠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몰래 가져가서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큰 일 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 | 06

다단계 관련 범죄

다단계 관련 범죄 피해의 경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사업 권유, 믿어도 될까?



사례1.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회원 가입을 권유한 경우

“한 달에 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가입했는데, 거짓말인가요?”



하나원에서 알게 된 선배가 단기간에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저를 자신이 일하는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회사에 갔더니 홍보국장이라는 사람이 3개월이면 월 500만원 이상은 쉽게 벌 수 있다며 **투자회원 가입을 권유**했고, 저는 **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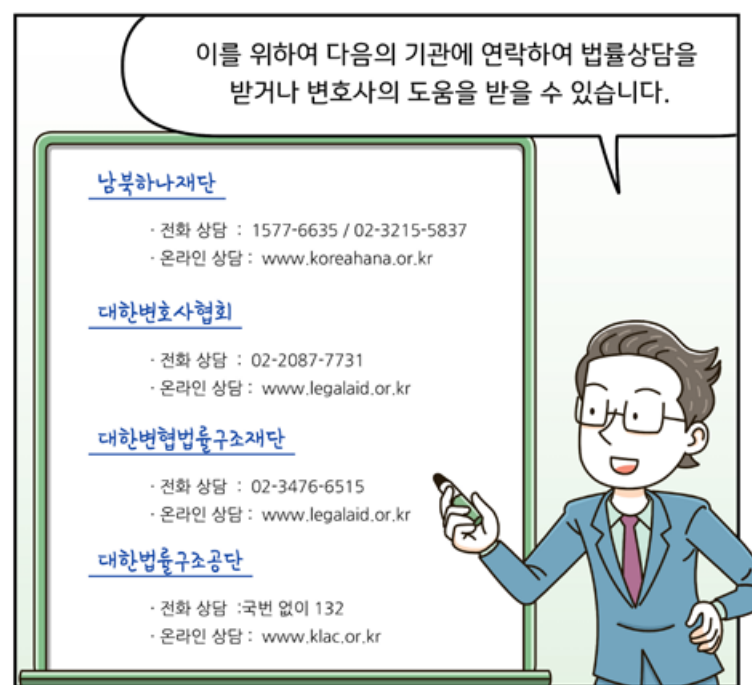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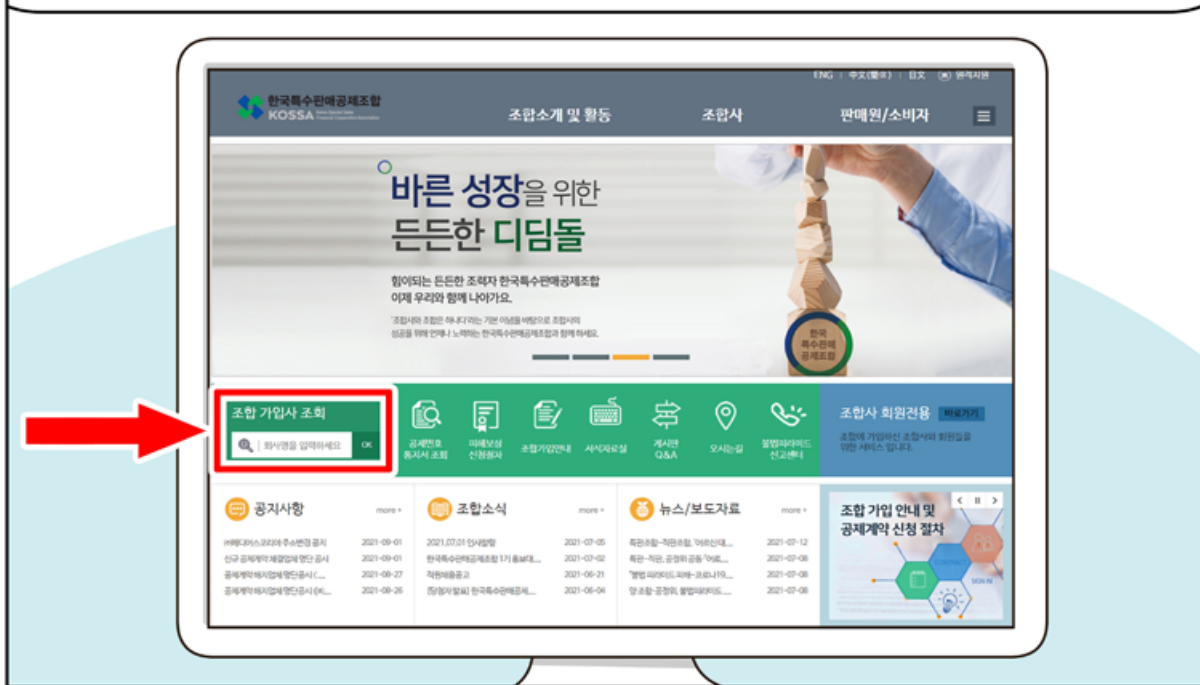
제가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불법다단계 투자사기일 수 있으므로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의 '회원사 조회'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lmunion.or.kr)의 '조합가입사 조회'에서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2. 취업 빙자 다단계

“기업에 취직한다고 해서 교육까지 받았는데 불법 다단계라니!”



친구가 일자리가 있다면서 이력서를 보내라고 해서 이력서를 보냈고, 합격되었으니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곳에 가서 연수에 들어가다면서 1주일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필요하니 부모님께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방을 얻어야 하니 전세금 1,000만원을 보내 달라”고 하라면서 돈을 구하게 하고 7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취업을 빙자한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 중 하나입니다.



다단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업체명을 물어보고, 해당 업체가 불법 다단계 업체는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방법과 도움을 받는 방법은 사례1과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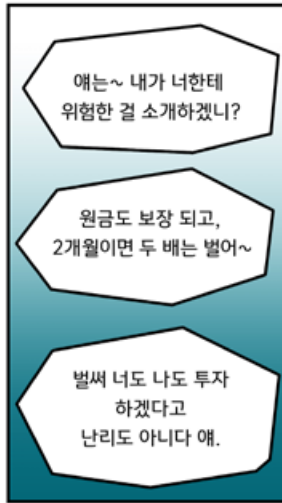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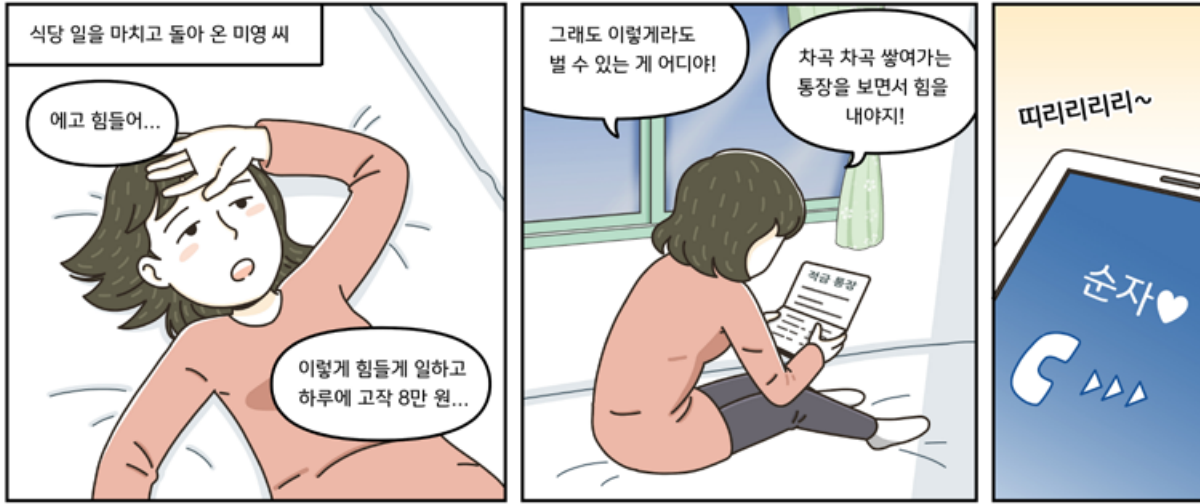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 | 07

사기 및 보험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벌었거나 속아서 돈을 잃은 경우

원금 보장에 수익률이 두 배? 투자해도 괜찮을까?



사기 및 보험사기

-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벌었거나 속아서 돈을 잃은 경우 -



이것만은 꼭! 알아둬시다!!

1.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보험사기죄는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 사기죄(개인재산속여가진죄) 및 보험사기죄에 관하여



사기죄란?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속여, 속은 사람이 돈을 주고 사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처벌은?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상대방이 사기로 잃게 된 돈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단순 사기에 비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의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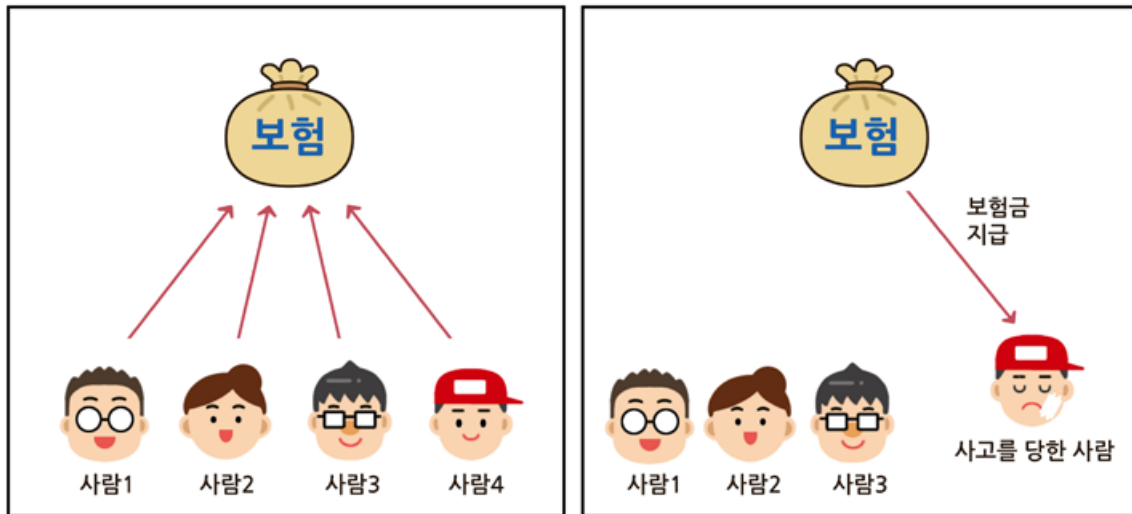
특정경제가중처벌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보험이란?

보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의 위험을 하나의 위험 집단으로 묶은 후, 각 개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준비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그 구성원 중 일부가 우연히 해당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으로 보상하여 주는 경제 제도입니다.



보험사기죄란?

보험사기란 보험자인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범죄는 일반 사기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보험사기죄의 경우 처벌은?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범한 사람이나 보험사기를 통해 얻은 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더 중하게 처벌되고,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이거나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잠깐!

보험사기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사가 주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면 보험사는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올려야 하며, 이 때문에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기죄 처리절차 :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방법을 중심으로

만일 귀하가 사기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① 사기를 쳤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가까운 경찰서에 사기죄 혐의로 고소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떼인 경우에 언제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갚을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상대를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

→ 사기죄 성립 O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갚지 못하는 경우

→ 사기죄 성립 X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그 상대방을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떼인 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② 법원에 사기 가해자를 상대로 귀하가 피해를 입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기죄로 신고했는데, 왜 법원에 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이란 범죄 피해를 입힌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거나, 범죄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형사사건>

이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이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민사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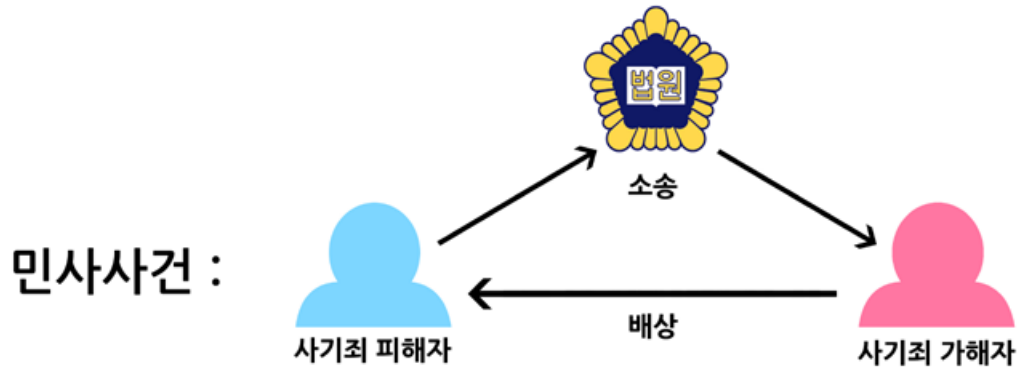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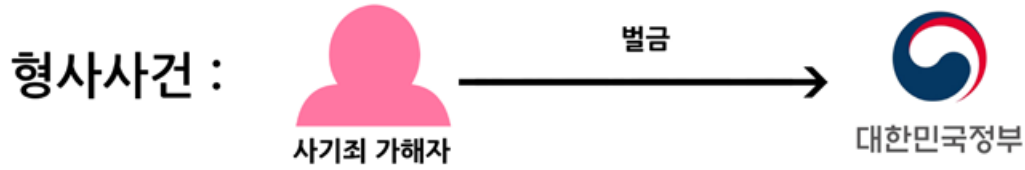
이 사람에게 사기 당한 금액을 배상 받고 싶어요!



민사사건이란 피해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회복 받으려고 하거나,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돈이나 물건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1. 형사사건의 처벌(징역형, 벌금형)은 국가가 하고 벌금은 국가에 납부합니다.

2.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하여 피해 금액을 배상받아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것으로 형사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국가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법원에 가해자로부터 입은 **피해금액을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례1. 고용지원금제도를 악용하여 허위로 돈을 번 경우

“지인의 제안으로 직원으로 등록한 것뿐인데, 그것도 죄가 되나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고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김씨는 제게 서류상으로 공장 직원으로 등록하면 **일 하지 않아도 월 3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제안을 받아들여 저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통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행위로 처벌받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것은 범죄이며, 귀하는 그 범죄에 가담하였으므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이란?
두 명 이상이 저지른 범죄에서 서로 범죄를 행할 뜻을 가지고 범죄를 실현하는데 기여한 사람.

또한, 귀하는 앞으로 **취업보호가 중단**될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법에 따라 받게 되는 모든 **보호 및 정착지원 혜택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국가를 속여 돈을 번 행위로서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 실행하지 않았으니 당장 취소할게요!

큰일날뻔했네!

사례2. 입원했다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동안 보험료를 냈는데, 부풀려서 보험금을 달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되나요?”



경미한 교통사고로 보험사로부터 많은 돈을 받는 방법을 알게 된 저는 친한 선후배 3명과 보험에 관련된 정보를 나눈 뒤,

3명이 총 300일 동안 장기입원을 하는 등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일로 제가 처벌되나요?

귀하를 포함하여 3명 모두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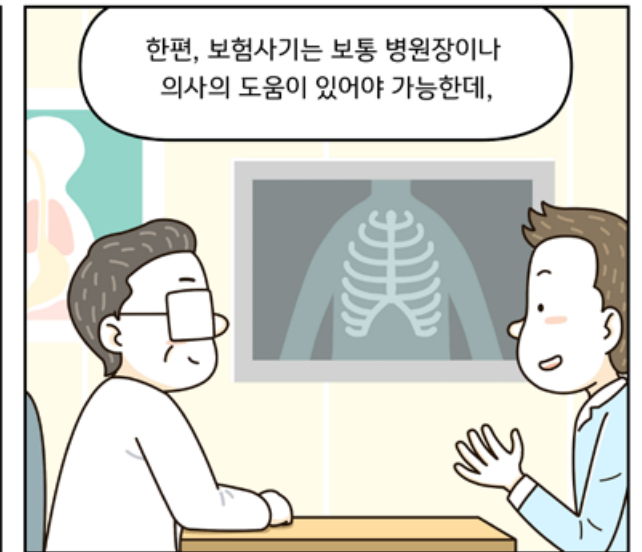
보험사기는 중한 범죄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범한 사람이나 보험사기를 통해 얻은 돈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되고,



“무기징역”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기는 보통 병원장이나 의사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데,



병원장이나 해당 의사가 입원이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입원을 시킨 것이라면 해당 병원장 또는 의사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험사기는 매우 중한 범죄임을 알고 이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3.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투자한 돈의 2배를 벌 수 있다는데 당연히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북한이탈주민모임에서 만난 선배가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2,000만원을 투자하면 2개월 안에 2배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사람에게 얘기해서 자금을 모았고 이렇게 투자해서 돈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하면서, 원금도 보장되니 투자하라고 권유하는데 투자해도 될까요?

투자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원금을 보장할 능력이나 뜻도 없으면서 그런 것처럼 속여서 돈을 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잘 살피고 위험하다 싶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법에 따른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유사수신행위**라고 하는데,

“유사수신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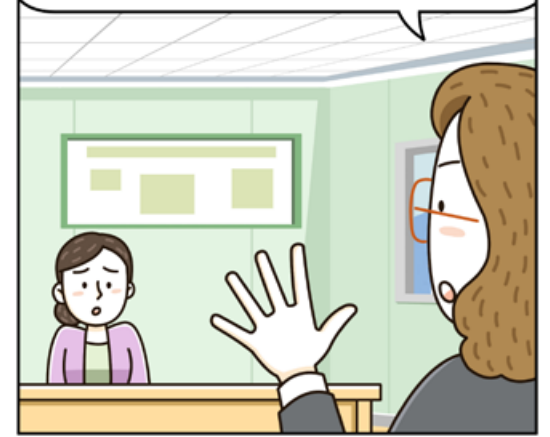


유사수신행위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보호받을 수 없고, 투자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투자금도 잃었는데... 개인정보까지 팔아 넘기다니!



투자사기를 당하면 사기죄로 가해자를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라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재판소)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귀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판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 범죄의 경우 범죄자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범죄자가 돈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므로 사전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투자를 해선 안 되겠어요!





Q&A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 | 08

경범죄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주의할 법률 문제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뛰지도 못한다고?



경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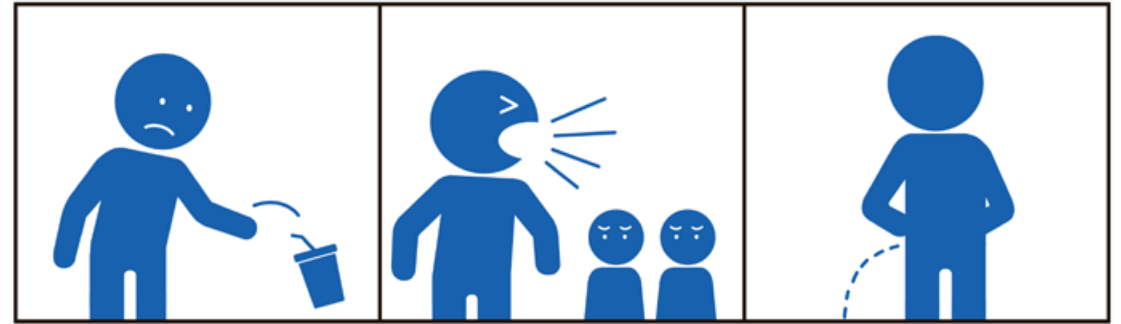
-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주의할 법률 문제 -



이것만은 꼭! 알아둬시다!!

1. 가벼운 행위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내 집에서 시끄럽게 하는 행위도 경범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경범죄로 통고처분을 받았을 때는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을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경범죄(가벼운 범죄) 처벌에 관하여



경범죄란?

쓰레기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거나 공공의 장소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부르는 행동 등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서, 가볍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 경범죄로 처벌받는 대표적인 유형

물품강매·호객행위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꽂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이나 버린 사람.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위와 같은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구류 : 10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경찰서 일시적으로 가둬두는 형벌
과료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돈을 국가에 내게 하는 형벌



○ 경범죄 통고처분 후 처리 절차

경찰서장은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납부하라고 알릴 수 있는데, 이를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통고처분이 있으면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은행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10일 이내 납부

범칙금
납부
통고서



통고처분이 있었는데도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그 사람을 **즉결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의 내용에 항의하려면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서를 받은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을 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범칙금액의 150%를 내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되어 즉결심판 절차가 끝납니다.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다. ^^



사례1. 고성방가, 층간소음

“내 집에서 시끄럽게 한 것으로도 처벌받는다구요?!”



택배 업무를 하는 저는 집에 오면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밤 10시가 넘는 시간에도 큰 소리로 노래를 틀거나 부르곤 했습니다.** 친구들을 불러 쿵쿵 거리며 노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파트 아래층에서는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으나, 저는 여긴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집에서 시끄럽게 한 것으로도 처벌받나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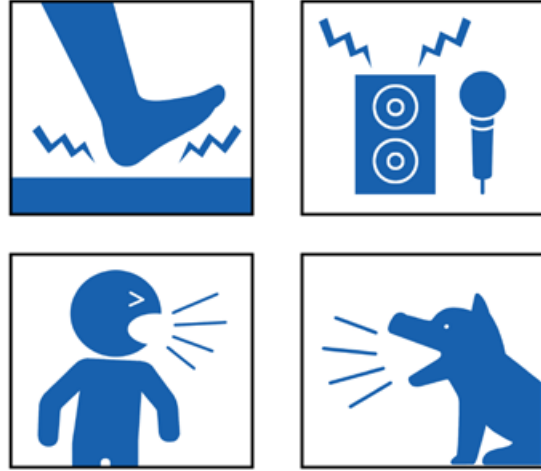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보통의 사람들이 참을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층간소음을 내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등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악기·텔레비전·전축·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드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 등 행위로서,

따라서, 공동주택에서는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법

직장 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대처 방안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어요. 난 어떻게 살라고?



노동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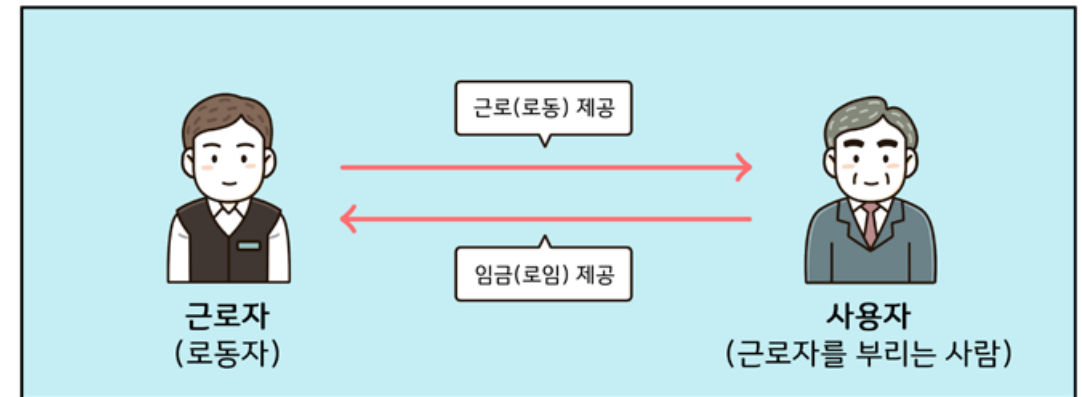
- 직장 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대처 방안 -



이것만은 꼭! 알아둬시다!!

1. 근로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2.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로동계약)의 체결과 주의할 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_____ (이하 “사업주”라 함)와 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휴게시간 : ____시 ____분 ~ ____시 ____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____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____요일
6. 임금
 - 월(일, 시간)급 : _____원
 - 상여금 : 있음 () _____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없음 () _____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 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



사례1. 밀린 임금(로임)을 청구할 경우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계속 안 줘요!”



저는 하나원 퇴소 후 식당에서 1년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은 임금을 제 때 주지 않고 자꾸 지급을 미루기만 합니다.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식당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가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서에 적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할 때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그곳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내용을 조사하여 식당 주인으로 하여금 월급을 지급하도록 촉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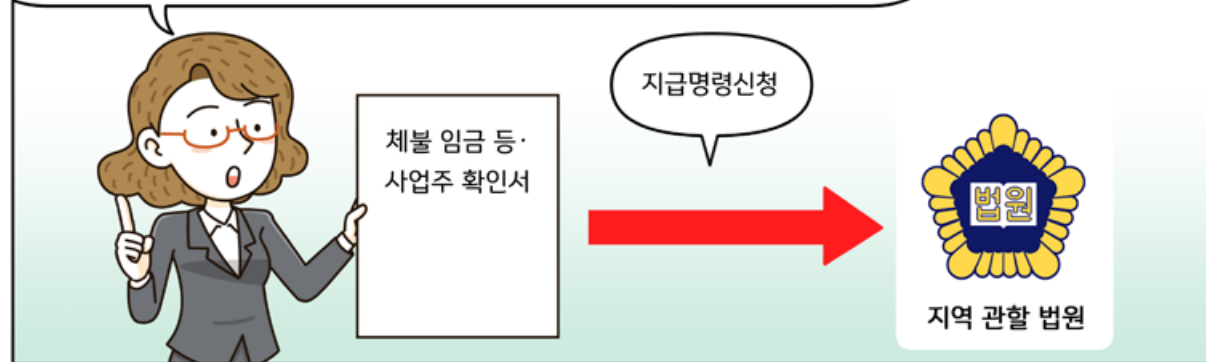
월급을 주지 않은 식당주인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신고된 사실을 알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보통은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했음에도 월급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호)
신청인	신청일자	처리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①신청인	종류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총 액액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법인인 경우 실제 대표자의 성명	
②대상 사업주	법인인 경우 명의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무료로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해 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 ① 일하던 곳이 사업을 시작한지 6개월 이상이 되고,
- ②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내에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 ③ 소액채당금지급청구서, 법원 판결문, 확정증명원,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사본을 지참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경우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각 700만원, 총 1,000만원을 한도로 국가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이 제도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례2.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 같은데, 어떡해야 하나요?”



하나원 퇴소 후 회사를 다니던 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지각이나 무단 결근을 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실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북한이탈주민이라 해고된 것 같아 억울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특성상 북한이탈주민이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각 사안에 따라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사항이므로, **노무사나 변호사 등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적 판단이 필요!



한편, 부당하게 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 보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 ①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다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 ② 해고된 때로부터 복직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 ③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할 수 없고,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만 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연락처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02)3218-6077~6079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051)559-3700,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031)259-5001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대전, 충남): 042)520-8070
- 전남지방노동위원회(광주, 전남): 062)975-6100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대구, 경북): 053)667-6520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055)239-8020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032)430-3100, 3113~31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033)269-3404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043)299-1260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063)240-1600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064)710-7990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052)208-0001



해당 지역 지방노동위원회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메모!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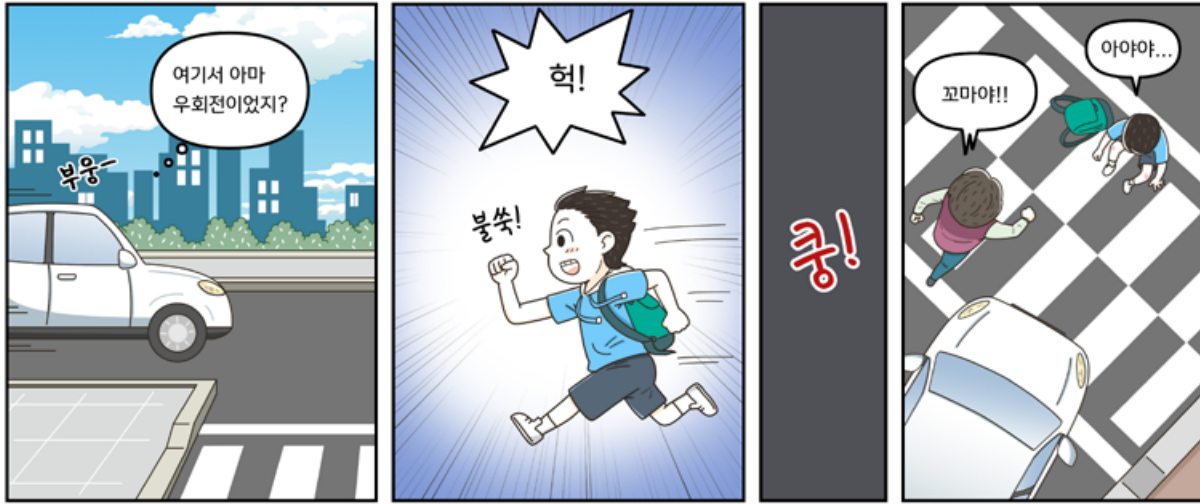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 | 10

교통사고

차량을 운전하며 발생하는 문제의 법률적 대처 방법

괜찮다고 해서 그냥 보냈는데, 제가 뺑소니범이라고요?



교통사고

- 차량을 운전하며 발생하는 문제의 법률적 대처 방법 -



이것만은 꼭! 알아둬시다!!

1.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처리 관련 법률 문제

○ 형사문제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

교통사고는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민사문제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의 치료비, 일할 수 없었던 기간 만큼의 수입,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더라도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통은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즉,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 없이 보험처리로 끝이 납니다.**



반면,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여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형사합의서에는 다음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합의한다”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12가지 중요한 위반 유형),
뺑소니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한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 | | | |
|--|---|---|
| 신호위반
신호등, 일시정지 표시,
경찰관의 수신호를 어긴 경우 | 속도위반
제한속도 초과 | 무면허 사고
운전면허,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중에 사고를 낸 경우 |
| 앞지르기/꺼어들기 위반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꺼어들기 금지 사항을 어긴 경우 |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고속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 중에 사고를 낸 경우 | 승객 추락방지
자동차에 탄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문을 정확히
닫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
|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도 건널목 통과 시, 정지에서
안전을 살피지 않은 경우 |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에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
| 음주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마약,
대마, 향정신성약품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 보도 침범
보행자가 걷는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 중에 사고를 낸 경우 | 화물고정조치 위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 교통사고 사건의 처리절차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교통사고 접수 (조사관 배정)

가해자,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담당 조사관의 현장조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건현장에 와서 사건을 조사합니다. 변호사,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목격자를 데리고 와 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등 진술 청취

경찰은 피해자, 목격자 등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사고에 관하여 보고 느낀 대로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가해자 조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가 피해자측과 손해액에 관하여 합의하여 형사사건이 되지 않고 끝이 납니다.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보아 가해자를 조사합니다.

사건 송치

조사 완료 후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건을 조사한 경찰서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신청하여 보험사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대처 요령

사고확인 및 부상자에 대한 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차를 멈춘 후 사고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병원으로 데리고 가거나, 119구급차를 불러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구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상호 연락처 주고 받기

부상자 또는 상대차량의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이나 명함 등을 보여주면서 귀하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사고관련 증거 확보

사고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현장사진을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차량용 스프레이를 이용해 사고장소를 표시하거나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찰 신고

부상자에 대한 긴급조치를 마쳤다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등에 사고 내용을 신고합니다. 혹시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 되더라도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뺑소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례1. 횡단보도(건능길) 위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는데, 그래도 처벌받나요?”



운전을 하던 중 잠시 한 눈을 판 사이에 횡단보도 위를 지나가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었고, 그 분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저는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습니다.
저는 처벌받나요?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다준 것은 매우 잘한 행동입니다.



만약 교통사고 후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하게 되면 더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횡단보도 위를 지나가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고, 이는 **12가지 중요한 위반 유형**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니고, 합의하면 가벼운 벌금 수준에서 사건이 끝이 나므로

합의

가벼운 처벌



가능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사례2. 음주운전을 한 경우

“소주 1병 마시고 몇 시간 후에 운전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하나원 동기 모임에서 소주1병 정도를 마셨는데, 술을 마신지 2시간 정도 지났고 정신이 멀쩡하다고 생각되어 직접 차를 몰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 앞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를 범한 것인가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죄**가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 | 11

법률상담 기관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 안내

○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

남북하나재단

▶ 온라인 상담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www.koreahana.or.kr) → 온라인 상담 → 상담 내용 작성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국번 없이 1577-6635)

- 교육상담 : 자기이해 및 교육상담, 학습상담, 장학지원 안내 등
- 취업상담 : 구직·구인 상담 및 기업체 안내, 취업지원센터 지원 상담
- 심리상담 : 생활스트레스, 우울, 불안, 대인관계문제 등 상담
- 주택상담 : 주택관련 상담, 임대아파트 및 특별 분양(자가 소유)관련 안내
- 의료상담 : 질병으로 인한 다양한 의료 상담 및 의료비지원
- 지원제도 상담 : 정착지원제도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및 상담
- 법률상담 : 법률관련 간략한 정보제공과 변호사 상담연계
- 성폭력 피해 상담 : 성폭력 피해 상담 기관 연계 「여성긴급전화1366」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www.legalaid.or.kr)



▶ 인권팀(02-2087-7731)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지원을 안내. 전화로 상담하면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를 연결하여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법률구조재단(02-3476-6515)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소송대리인 등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

○ 법률구조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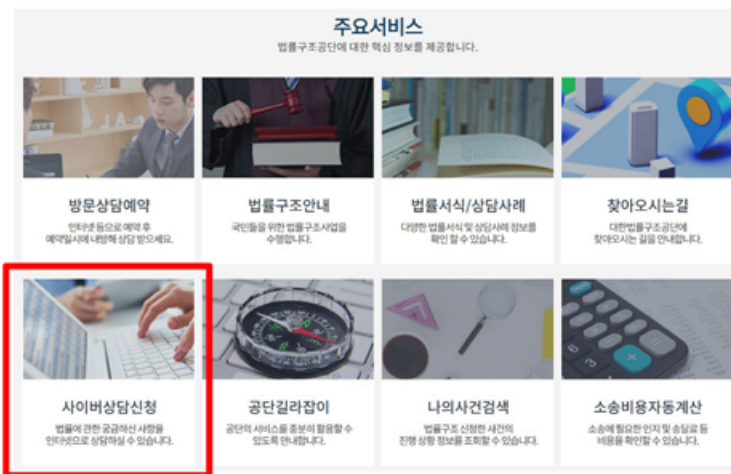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 법률상담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2
- 온라인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사이버상담 → 상담내용 작성



▶ 법률구조

법률구조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등을 지원.

- 신청방법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하나원수료 증명서 지참하여 공단 사무실 방문 → 법률구조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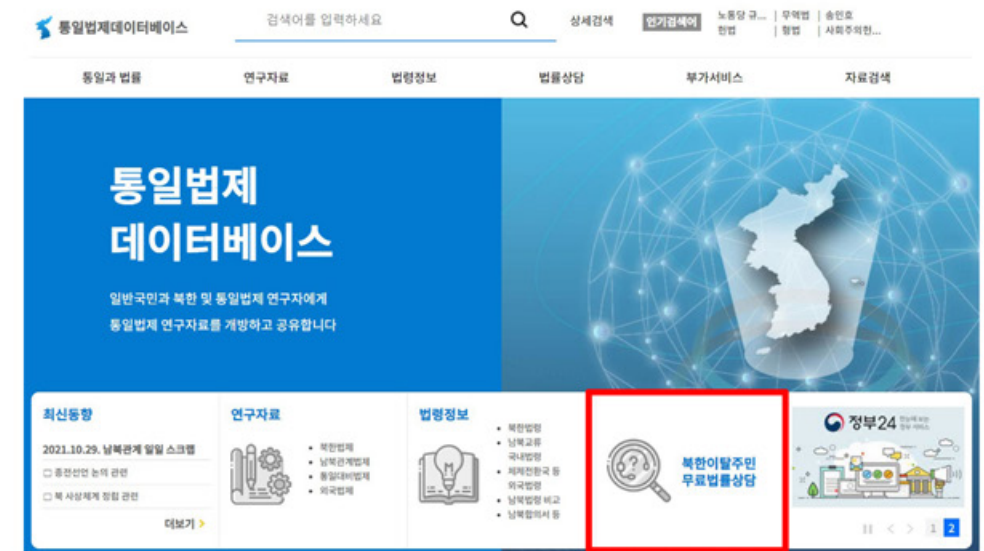
법무부 통일법무과

▶ 전화상담

- 법무부 통일법무과 : 02-2110-3114

▶ 온라인 상담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www.unilaw.go.kr) → 북한이탈주민 무료법률상담



검색어 입력하세요

검색

제목	일자	처리상태
법률상담	2021-10-08	상담완료
대여권 회수, 주민등록증 한자등록문의	2021-09-11	상담완료
투자사기	2021-07-31	상담완료
특수공무집행법에 협의	2021-07-29	상담완료
중인병자사기	2021-07-28	상담완료
재권회수	2021-07-03	상담완료
나이를 증명할려합니다	2021-05-16	상담완료
집에 대신 살고 있던 사람이 안나가겠다고 하네요.	2021-04-19	상담완료
혼인신고	2021-03-29	상담완료
이혼	2021-03-29	상담완료

상담신청

○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연락처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02)3218-6077~6079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051)559-3700,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031)259-5001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대전, 충남): 042)520-8070
- 전남지방노동위원회(광주, 전남): 062)975-6100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대구, 경북): 053)667-6520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055)239-8020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032)430-3100, 3113~31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033)269-3404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043)299-1260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063)240-1600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064)710-7990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052)208-0001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

발행처 통일부 제2하나원 교육운영팀 <비매품>
(우 24137)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동우체국 사서함 2호

총괄기획 제2하나원 교육운영팀

만화제작 장통일러스트레이션 장윤호, 이주영

초판 1쇄 2021년 11월

편집디자인·제작 주식회사 지원대산업
(우 12930)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덕풍동 762)
아이테크지식산업센터 블루존 619호
전화 02)2272-5562

